

관세연구 12-01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2012. 8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수 영 관세사

김 미 영 관세사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12
1. 개관	12
가. 개요	12
나. 일반수입신고 절차	13
2. 소액물품 면세기준	14
3. 통관절차	17
가. 개요	17
나.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19
다. 우편 수입	23
라. 특송 수입	26
III.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운영현황	31
1. 미국	31
가. 개관	31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34
다. 통관절차	36
2. 호주	47
가. 개관	47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50
다. 통관절차	53
3. 일본	60

가. 개관	60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63
다. 통관절차	64
4. 캐나다	75
가. 개관	75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78
다. 통관제도	82
5. 영국	91
가. 개관	91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94
다. 통관절차	97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05
1. 국제비교	105
가. 소액면세 제도 비교	105
나. 신고특례 제도 비교	106
다. 물품 위험관리제도	107
라. 분할선적	108
2. 시사점	111
가.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제도의 실효성 검토	111
나. 소액물품 면세제도의 개선방안	112
다. 통관 특례제도의 개선방안	115
라. 특송업무 실무상 개선점	120
참고문헌	122
부 록	
[부록 1] 수입통관 고시 별표17,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제3-1-1조 관련)	124

[부록 2] 특송물품 고시 별표1 및 별표2,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배제대상.....	125
[부록 3] 특송물품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통관목록.....	126
[부록 4] 특송물품 고시 별표5, 특송창고 표준 Lay-out.....	127
[부록 5] 미국 CBP Form 3461, 일반수입신고서식.....	128
[부록 6] 미국 CBP Form 7501, 납세신고, informal entry 서식.....	129
[부록 7] 호주 Cargo Report 신고 시스템 화면.....	130
[부록 8] 호주 Industry Imports Manual, 2007., SAC 신고 시스템 화면.....	131
[부록 9] 캐나다 CBSA, Memorandum D8-2-16 부록, 특송 수입 감면 Consist Sheet.....	132
[부록 10] 캐나다 CBSA, Memorandum D17-4-0 부록A, courier LVS 프로그램의 화물/반출리스트 샘플.....	133
[부록 11] 캐나다 CBSA Form B3, Canada Customs Coding Form.....	134
[부록 12] 캐나다 CBSA, Memorandum D5-1-1 부록A, Form E14, CBSA Postal Import Form.....	135
[부록 13] 캐나다 CBSA, Memorandum D5-1-1 부록A, Form B2G, Requesting Refund of Duties and Taxes on non-commercial Importations.....	136
[부록 14] 캐나다 CBSA, Memorandum D5-1-1 부록B, Form B2G, CBSA Informal Adjustment Request.....	137

표 목 차

〈표 I -1〉 전자상거래 수입 동향.....	10
〈표 II -1〉 소액물품 면세기준.....	16
〈표 II -2〉 통관 방법 구분 기준.....	18
〈표 II -3〉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유형.....	20
〈표 II -4〉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입통관 실적.....	21
〈표 II -5〉 특별통관대상업체의 혜택.....	22
〈표 II -6〉 목록통관 대상물품 수입 동향.....	27
〈표 II -7〉 특송물품의 통관 유형.....	28
〈표 III -1〉 미국의 통관 절차.....	33
〈표 III -2〉 미국 우편물의 통관 유형.....	41
〈표 III -3〉 미국 특송물품의 통관 유형.....	46
〈표 III -4〉 호주의 운송방법에 따른 수입 동향.....	48
〈표 III -5〉 소액물품의 면세기준 하향효과.....	52
〈표 III -6〉 도쿄세관의 주요 불법 마약 적발 상황.....	61
〈표 III -7〉 우편 물품의 배송 및 납세 유형.....	68
〈표 III -8〉 국제택배편 항공화물.....	74
〈표 III -9〉 캐나다의 소액물품 면세기준.....	80
〈표 III -10〉 영국 소액물품 면세기준.....	96
〈표 III -11〉 역외국으로부터 수입 시 납부의무 세금.....	97
〈표 III -12〉 영국 우편 통관 요약.....	101
〈표 IV -1〉 개인 소액물품 수입 특례기준 국제비교-11).....	109

〈표 IV-2〉 개인 소액물품 수입 특례기준 국제비교-21).....	110
〈표 IV-3〉 고시 주요 개정 요약.....	116

그림 차례

[그림 II-1] 국제우편물 통관 절차.....	26
[그림 II-2] 특송물품 통관절차.....	30
[그림 III-1] 호주의 항공운송 소액물품 수량 추이.....	48
[그림 III-2] 일본 개인물품 일반 수입 절차도.....	63
[그림 III-3] 일본 개인물품 우편 수입 절차도.....	67
[그림 III-4] 일본 개인물품 특송 수입 절차도.....	73
[그림 III-5] CIRO(Courier Imports Remission Order) 수입절차.....	88
[그림 IV-1] 법령별 규정된 면세·과세 구간.....	117
[그림 IV-2] 전자상거래 특별통관고시에 규정된 구간별 통관 규정.....	118

I. 서론

- 전자상거래는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함¹⁾
 - 여기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 우리나라는 국제협약²⁾ 및 관세법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5년 전자상거래물품의 법규준수도 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지정하여 수출입신고 방법, 물품검사방법 등의 통관혜택을 부여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 전자상거래 수입실적은 2005년부터 건수, 금액 면에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2009년 들어 전자상거래업체의 확산으로 급증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주체가 개인에서 기업, 정부로 확대되고 있으며, 거래상품의 종류도 의류잡화와 같은 초기의 한정된 상품에서 벗어나 자동차부품 디지털매체용역 등 전 품목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거래되고 있음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전자상거래물품이 특송 또는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1) WTO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품의 생산, 광고, 판매 및 유통’이라고 정의하여, 전화·팩스·케이블TV·인터넷 등 광범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 광고와 유통을 전자상거래에 포함함(최병철,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논의」,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11권 제1호, 2001년; WTO,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1998)

2) 국제협약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는 2002년에 활성화되다가 무역원활화라는 의제가 DDA에서 채택되면서 간이통관 및 세관의 규제완화의 방법으로 방향이 전환됨. 2003년 3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개정교토협약과 함께 각국 세관에 권고되고 있는 즉시반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특송물품사 무처리예관한고시에 반영됨

비중은 아래의 표와 같이 건수 기준으로 2007년에 비해 2011년 50%가 증가하였
음³⁾

〈표 I-1〉 전자상거래 수입 동향

(단위: 건, 천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특송·우편물	건수	1,378,787	1,537,667	2,583,095	4,092,000	5,841,000
			(12)	(68)	(58)	(43)
	금액	5,377,695	5,603,197	5,289,938	6,845,355	11,487,544
			(4)	(-6)	(29)	(68)
전자상거래	건수	197,592	253,183	1,057,017	2,504,000	3,909,000
			(28)	(318)	(137)	(56)
	금액	48,864	50,265	92,676	217,815	378,126
			(3)	(84)	(135)	(74)
전자상거래 구성비	건수	14.3	16.4	40.9	50.2	66.9
			(15)	(149)	(23)	(33)
	금액	0.9	0.9	1.8	3.2	3.3
			(0)	(100)	(78)	(3)

주: 1.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EDI 수입통관실적 기준, 2012년 4월 2일 기준(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457&bbbs=INDX_001)

- 이와 더불어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해외 불법 전자상거래 금액이 995억원에서 2011년에는 6,999억원으로 7배가량 늘어났음⁴⁾
- 국제특송의 간편한 절차를 악용하여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수입금지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물품(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관세를 탈루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반입수법도 종전에는 주위 친지 등을 이용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국내 최종 배송업자와 결탁하여 통관 후 배송지를 변경하는 수법 등 다양해지고 있음

3) 주요 수입국은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의 순이며 품목은 건강식품, 의류, 화장품의 순서로 나타남

4) 서울본부세관 보도자료, 2012. 5.

-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용물품을 구매하면서 명의를 도용하여 분산 밀반입하여 소액면세를 적용받은 적발 건수는 2011년 71건으로 2010년의 48건에 비해 48%로 대폭 증가함⁵⁾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대부분 소액, 소량인 전자상거래물품이 적용되는 소액면세제도의 과세형평성을 검토하고, 물품검사의 면제 또는 제출 서류의 면제 등 통관특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전자상거래업체가 개인이 구매하는 것처럼 자가사용 물품의 소액면세를 적용하거나, 분할선적, 명의도용 등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따라서 본 보고서는 크게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기준과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경로에 따른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제도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해외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의 운영 현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음
 -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제도인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특송수입, 우편수입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함
 - 제Ⅲ장에서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의 소액면세 기준과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을 포함한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제도를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과세특례제도와 통관특례제도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5) 인천공항세관 블로그, 2012. 2.

Ⅱ.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1. 개관

가. 개요

- 전자상거래물품은 주로 항공운송으로 통관우체국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경로에 따른 통관절차를 따르되,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제출서류가 면제되는 간소한 통관절차 및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인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만,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관세탈루 및 수입요건 절차 회피 등의 폐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2005년 12월 특별통관제도를 마련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지정하여 간이통관의 특례 적용을 제한하고 관리하고 있음
- 국내법령은 「관세법」에서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와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한 간이신고 적용을 규정하고, 고시에서 각각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편물,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를 규정함
 - 소액면세: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일반수입신고 및 간이신고: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항,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이하 '수입통관 고시')
 -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동법시행령 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이하 '특별통관 고시')
 - 우편물: 「관세법」 제256조(통관우체국),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제258조(우편물 통관에 대한 결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제261

조(우편물의 반송), 동법 시행령 제260조 내지 제263조,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 처리에관한고시(이하 '국제우편물 고시')

- 특송물품: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특송물품 고시')

나. 일반수입신고 절차

- 우리나라의 수입신고 절차는 수입신고, 세관의 신고서 처리, 신고수리, 신고납부, 물품반출의 순서로 이루어짐
 - 수입신고는 관세사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함
 -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가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됨
- 수입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와 다음의 서류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전송하는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P/L(paperless)신고'라 함)를 원칙으로 함
 -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분,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⁶⁾
-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1. 물품검사 및 심사, 2. 심사, 3. 전자통관심사⁷⁾의 방법에 의함
 -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신고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심사함
 - 관세채납자가 신고하는 물품 등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6)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7조, 이외의 제출서류는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구비서류,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 납세담보확인서, 김벌리프로세스증명서, 세율증명서류가 있음

7) 2011. 10. 31. 신설

지정된 물품 이외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의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함

-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전자통관심사가 신설됨
- 통관시스템 또는 세관공무원에 의해 검사대상물품을 선별하며, 전자통관심사 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검사를 원칙으로 함
 - 검사대상물품은 전량검사, 발취검사, 분석검사 또는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를 실시함
-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내용을 심사한 후 적법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검사대상물품의 경우 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하며,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함
- 부과지대상물품을 제외한 수입신고대상물품은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 원칙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2. 소액물품 면세기준

- 소액물품 등의 면세는 특정목적을 위해 과세의 특례를 부여하는 관세감면제도의 하나로써 「관세법」에서 정한 용도와 금액 기준에 따른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

8)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 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은 10%로 함

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되는데 이 가운데 소액물품은 「관세법」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세법」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세가 면세됨⁹⁾

-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자가사용 및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과세가격 15만원 이하¹⁰⁾인 물품으로서 선물용 여부를 불문함
 -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의약품 6병, 인삼 300g 등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 3-1-1조 별표17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함

- 주문한 상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됨(사후심사 추가징수 가능)

- 최근 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자가사용 소액물품 및 목록통관대상물품 등의 면세 대상물품이 특송의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고, 우편수입의 경우가 대부분임

-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수입화주, 즉 납세의무자가 개인구매자가 아닌 업체인 수입 쇼핑물형 거래물품에 대해서는 소액물품 면세적용을 배제함
 - 쇼핑물이 10명의 개인에게 각각 15만원의 물품을 주문받은 경우 수입대행형거래라면 개인이 납세의무자로서 모두 면세되지만 수입쇼핑물형거래라면 상업용물품을 수입하는 쇼핑물업체가 납세의무자로서 10개의 물품가액 합이 과세가격(150만원)이 되어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¹¹⁾

9) 「부가세법」 제12조 제2항 제6호

10)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관세가 무세인 물품 등도 소액물품 면세대상에 포함됨

11) 관세청 보도자료, 2004. 12.

- 우편물의 경우 X-ray검사 결과 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소액면세 물품을 포함한 다음의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 처리함¹²⁾
- 우편물신고서상 품명·가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 과세가격이 USD 250 이하의 상용견품 등
 - － 상업서신, 카탈로그, 서적 등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 합산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 － 기타 X-ray검사 내용과 우편물신고서상의 품명·중량·가격 등을 비교하여 면세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
- 특송물품은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받음
- 가격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한미 FTA 및 FTA특례법에 의해 USD 200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제함
 - － 물품가격이 USD 100 이하이고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목록통관을 적용받고, USD 100 초과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인 경우 일반수입신고 및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받음

〈표 Ⅱ-1〉 소액물품 면세기준

구분	물품가격	비고
우편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관세법 제94조
특송	USD 100 이하	관세법 제254조의2
	USD 100 초과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관세법 제94조

12) 국제우편물 고시 제3-1조

3. 통관절차

가. 개요

1) 간이통관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우편 또는 특송의 수입경로에 따라 간소한 통관절차인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간이신고,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을 적용할 수 있음
 - 일반통관은 P/L 신고(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및 서류 제출, 검사,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가 요구됨
-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은 간이신고 대상물품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목록통관, 간이신고, 검사 및 심사의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임
- 간이신고는 물품의 가격이 우편물의 경우 USD 1,000, 특송의 경우 USD 2,000 이하인 물품에 대해 일반수입신고의 서류제출 요건이 면제되는 일반수입신고의 특례임¹³⁾
 -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간편하게 전산으로만 물품내역을 수입신고하며, 대부분 검사가 생략되거나 물품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함
- 목록통관은 특송물품으로서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USD 100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통관절차임¹⁴⁾

13) 일반수입신고의 예외로 수입신고생략대상물품 중 과세되는 물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는 간이신고를 적용함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당해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2. 당해물품의 총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3.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4.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

14) 법 제254조의 2, 규칙 제79조의2

- 통관목록은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목록임
- 특송업체가 물품목록만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세금 납부 없이 통관절차가 종료됨
-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USD 200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건품은 원산지과 관계없이 목록통관 대상임¹⁵⁾

〈표 II-2〉 통관 방법 구분 기준

(단위: 미국달러)

구분	국제우편물	특송물품
목록통관	-	100 이하 (자가사용/상용건품)
간이신고	1,000 이하	2,000 이하
일반신고	600 초과	2,000 초과

2) 수입 구비조건 면제

-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확인이 가능한 허가, 승인, 표시 및 기타 조건(이하 '구비조건'이라 함)의 확인 및 증명이 필요한 물품 가운데 소액물품 등은 세관이 확인해야 하는 구비조건이 면제됨
 -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출을 면제함(법 제232조)
 - 우편물(신고대상 우편물 제외)
 -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 또한 한·미 F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USD 1,000 이하의

15) 한·미 FTA 제7.7조 특송화물(Express Shipments)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하여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로 확인 후 협정세율을 적용함¹⁶⁾

나.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업체는 별도로 지정된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통관절차의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음
-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중 통관적법성, 경영안전성 등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해 통관특례를 적용함
 -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특송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적용하도록 간소한 통관절차를 제한하고 있음

1) 전자상거래 거래 유형

- 전자상거래업체를 거래형태에 따라 개인수입형, 배송/결제대행형, 수입대행형, 수입쇼핑몰형거래의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주문을 토대로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및 손익과 거래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
 - 수입대행형거래와 수입쇼핑몰형거래만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이 가능함
- 개인수입형 거래는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로 2011년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의 80% 이상을 차지함
- 배송/결제대행형 거래는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16) 한·미 FTA 제6.16조 증명 또는 그 밖의 정보의 면제(Waiver of Certification of other information)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임

- 수입대행형 거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 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 일정 요건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등으로 함

- 수입쇼핑몰형 거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임

〈표 II-3〉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유형

구분	거래형태	납세의무자 (수입화주)
개인수입형, 배송/결제대행형	국내구매자가 직접 해외쇼핑몰에서 구매·수입하거나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형태	국내구매자
수입대행형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하에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만을 부담하는 형태	국내구매자
수입쇼핑몰형	전자상거래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	전자상거래업체

- 수입통관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이 개인수입형과 수입대행형에 의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II-4〉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입통관 실적

(단위: 건, 천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수입형	140,230	28,065	732,607	57,785	1,898,250	155,735	3,252,887	302,532
수입대행형	104,809	13,959	314,910	27,913	595,427	54,982	647,772	67,936
수입쇼핑몰형	8,144	8,241	9,500	6,978	10,332	7,098	8,452	7,658
합계	253,193	50,265	1,057,017	92,676	2,504,009	217,815	3,909,111	378,126

자료: 관세청

2)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 특별통관대상업체는 물품요건 및 업체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신청 후 서류심사와 실지심사를 거쳐 지정됨
 - 특별통관 적용이 가능한 거래물품은 수입대행형 및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USD 2,000 이하의 특송물품과 USD 600 이하의 우편물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전자상거래업체가 아닌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이 수입하거나 법인의 구매요청을 받아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 특별통관 적용이 가능한 업체는 수입대행형 및 수입쇼핑몰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만, 전자상거래 업종 중 수입대행에 의한 매출에 한함)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현황은 2012년 8월 기준으로 총 72개 업체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가 59개로 82%를 차지함
- 특별통관대상업체의 과세가격, 거래유형 등 신고의 정확도, 정보제공의 성실도, 불법통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규준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비

을 차등 적용, 통관편의 배제, 지정취소 등 통관절차를 차등 적용할 수 있음

- 특별통관대상업체는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받아 신속한 통관이 가능함
 -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적용함
 - 영업유형 심사 및 영업유형에 따른 적정 신고 여부의 심사를 생략함
 - 특송물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 X-ray 검사 또는 수작업 선별 검사를 수행함
 - 비지정업체에 대해서는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선통관 후세금납부제를 배제함
 - 납세보증은 특송업체가 자기명의로 운송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물품 및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에 대해 납세보증서와 담보물을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특별통관대상업체의 통관특례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전자상거래업체가 납세의무자인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대해 특히 통관절차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5〉 특별통관대상업체의 혜택

구분	비지정업체	특별통관대상업체	
		수입대행형	수입쇼핑몰형
신고	일반수입신고	목록통관	목록통관 배제
		간이신고(단, 수입쇼핑몰형업체의 국제우편물은 배제)	
검사	1. X-Ray검사/현품검사	전산 선별된 건만 검사(특송)	
	2. 개장검사/발취검사	원칙적으로 배제(우편물)	
심사	영업유형 심사	배제	
		목록통관사후심사	- ¹⁾
기타	요건 확인	면제	요건 확인
	납세보증 배제	납세보증 적용	

주: 1) 목록통관사후심사 해당사항 없음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통관지세관장은 분기별 1회 이상 거래유형(수입대행형, 수입쇼핑물형) 준수 여부 등 다음의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함
 - 인터넷 도메인 주소 변경 여부, 주소·대표자·상호 등 변경 여부, 홈페이지 정상 운영 여부
 - 전자상거래물품등에관한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별표1의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 공시항목별 세부기준 준수 여부
 - 최근 1년간 통관실적이 없는 경우,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사이버몰에 불법물품 반입을 조장하거나 소액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물품을 분할 또는 반복 수입하여 소액면세 적용을 받도록 조장하는 문구가 게재된 경우 등 갱신 신청 의무를 제외한 지정취소요건 해당 여부

다. 우편 수입

1) 개요

- 우리나라는 국제우편물에 관한 협약인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이하 'UPU')의 회원국으로서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간이통관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공통된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서신을 제외한 통관대상 우편물은 통관우체국¹⁷⁾을 경유하여야 함
- 우편물은 수출입신고대상(「관세법」 제258조 제2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입, 수출 및 반송신고가 생략되며, 검사 및 심사 결과 현장면세, 현장과세, 재감물품으로 구분되어 각각 해당하는 통관절차를 거침 (검사→심사→1. 현장면세, 2. 현장과세 및 간이통관, 3. 일반통관)
 -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취인이며 수출입신고대상을 제외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지함

17) 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

2) 통관절차

- 납세의무자는 특급우편물 목록(EMS Manifest) 및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표지(CN22), 세관신고서(CN23), 송장(CP71, CP72) 등 우편물신고서를 제출
 - 세관신고서는 우편물 번호, 품명, 송·수하인, 중량 등이 기재된 자료인 UPU 공통 서식임

- 통관우체국에 우편물이 도착하면 통관우체국에서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세관에 제출
 - 우편물목록은 우편물의 종류, 번호, 발송국가, 발송인 성명, 수취인 성명 등, 품명, 중량, 수량, 가격 등 통관에 필요한 항목이 기재된 자료를 말함

- 서신을 제외한 모든 통관대상 우편물은 우선 세관의 X-ray 검사를 거쳐야 하며,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 현품검사를 거침

- 검사한 우편물에 대해 우편물목록 및 우편물신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과세대상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의 통관허용 및 과세면세 여부를 심사함
 - 검사 및 심사결과 다음의 경우 관세법 또는 상표법 위반혐의를 조사하여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이행하여야 함
 - 우편물신고서상에 품명, 가격, 수량, 송하인 및 수하인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현품검사 결과 수출입 신고내역과 상이한 경우
 - 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타 법령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
 - 면세 또는 반입제한 회피목적으로 물품을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
 - 기타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 X-ray검사 결과 소액면세물품 등 현장면세 대상은 검사가 완료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며, 현장과세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통관절차를, 그 이외의 재감물품은 간이통관 또는 일반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 X-ray검사 및 현품검사 결과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 등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현장과세하며, 그렇지 않은 재감물품은 과세 및 수입요건 확인 등을 위해 자료를 제출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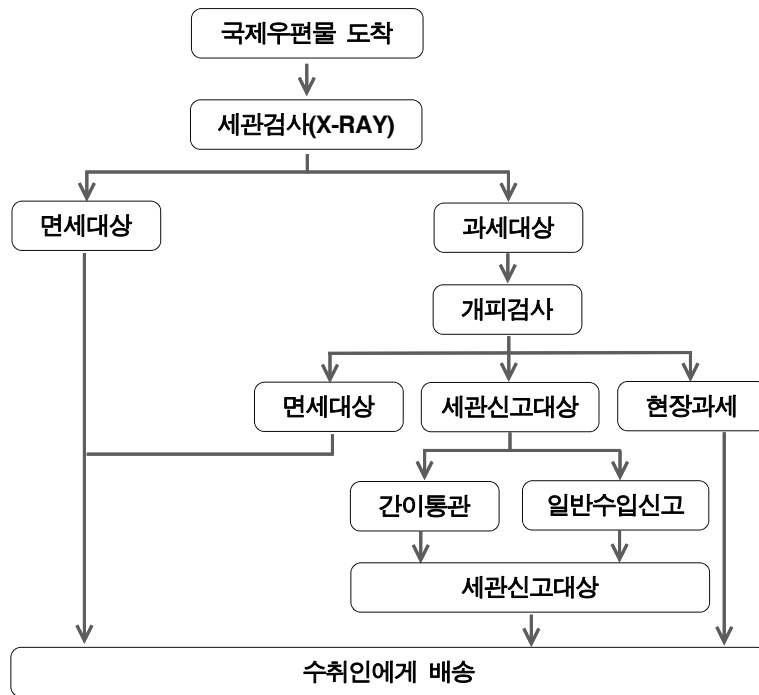
- 현장과세 대상은 간이통관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명확하고, 세액산출에 곤란이 없는 물품가격 USD 1,000 이하인 물품으로 함

-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사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 허가, 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USD 1,000을 초과하는 물품
 - 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 조약, 국제법규에 따라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 관세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
 - 가공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 현장과세물품은 납세고지서를, 재감물품은 간이통관대상 또는 수입신고대상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취인에게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함
 - 통관우체국이 가격자료, 수입허가서나 추천서 등 통관 시 구비서류, 제출방법, 수입신고대상 여부, 통관불허 사유 등을 기재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이 이를 수취인에게 통지함

- 현장과세한 물품의 수취인이 간이세율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기본세율 등에 의한 세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함

[그림 II-5] 국제우편물 통관 절차



자료: 관세청

라. 특송 수입

1) 개요

- ‘특급특송물품’(이하 ‘특송물품’이라 함)이라 함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견품 등을 말함
 - 특송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함

- 특송물품의 통관혜택을 악용한 불법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목록통관의 경우 화주의 이름만 신고하게 되어 있어 개인명의를 도용한 분산반입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었음
- 관세청에서는 2005년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비특별통관대상업체들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정확한 인적사항과 품명을 신고하도록 목록통관배제를 시행하였음
- 특히 2009년 7월에 특송물품의 선별기능을 높여 마약, 총기류, 모조품 등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송물품 고시를 개정하면서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일반수입신고하도록 함¹⁸⁾
 - 아래와 같이 제도 도입 이후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

〈표 II-6〉 목록통관 대상물품 수입 동향

(단위: 천건,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건수	6,593	-	5,336	(-19)	4,749	(-11)	5,729	(21)
금액	244	-	163	(-33)	129	(-21)	182	(41)

주: 괄호 안은 증가율을 나타냄

- 특송업체는 세관과 협정을 체결한 후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세관은 특송업체의 주기적 실제점검, 차등관리 평가와 특송 C/S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
 - 자체시설이용 승인요건 및 관련법규 이행 여부, 특송물품의 적정관리 여부에 관하여 연2회(반기별 1회) 정기점검 및 사전교육을 실시
 - 특송물품의 신고정확도, 검사대상물품 선별의 성실도, 시설장비인력관리 등 특송업체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
 - 특송업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 양호업체, 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로

18) 관심 제2011-26호

- 구분하여 검사비용 차등관리, 자체시설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업체에 대해서는 차등관리 평가대상에서 배제하고 관련 고시에 따름
- 특송물품 담당 과별로 관리담당자를 각 1명씩 지정하여 특송 C/S시스템 운영을 관리하여야 함
 - 목록통관 C/S시스템 및 간이신고 C/S시스템상의 검사기준 선정, 변경, 관리, 실적 평가, 분석 및 개선사항을 관리함
- 특송물품의 통관유형은 금액 및 용도기준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으로 구분됨

〈표 II-7〉 특송물품의 통관 유형

구분	대상	수입신고인
목록통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USD 100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통관목록 제출자: 특송업체
간이통관	USD 100을 초과하고 USD 2,000 이하인 물품으로서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화주 또는 관세사
일반통관	USD 2,000을 초과하는 물품	화주 또는 관세사

- 비특별통관대상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등의 목록통관 배제대상 및 목록통관 배제대상을 포함한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2) 통관절차

-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를 요약하면, 반입 후 X-ray검사 또는 현품검사 및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정밀 개장검사(전량 원칙, 예외 발취) 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물품은 수입

신고수리되며, 이상이 있는 경우 통관보류, 신고각하 또는 취하의 조치를 취함

○ 목록통관특송물품은 검사 및 심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수리된 후 사후심사¹⁹⁾를 거침

□ 특송물품은 세관지정 장치장 또는 승인받은 특송업체 자체시설의 X-ray검색대를 통과하여 반입되어 통관 유형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물품으로 분류됨

□ X-ray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통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전산C/S시스템 또는 정밀개장검사의 수작업 선별을 통해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분류함

○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한 심사 또는 검사결과 이상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여야 하며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간이신고특송물품에 대한 심사 또는 검사결과 이상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신고를 각하 또는 취하하여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검사를 거쳐야 함

□ 심사 또는 검사 결과 이상 없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한 후 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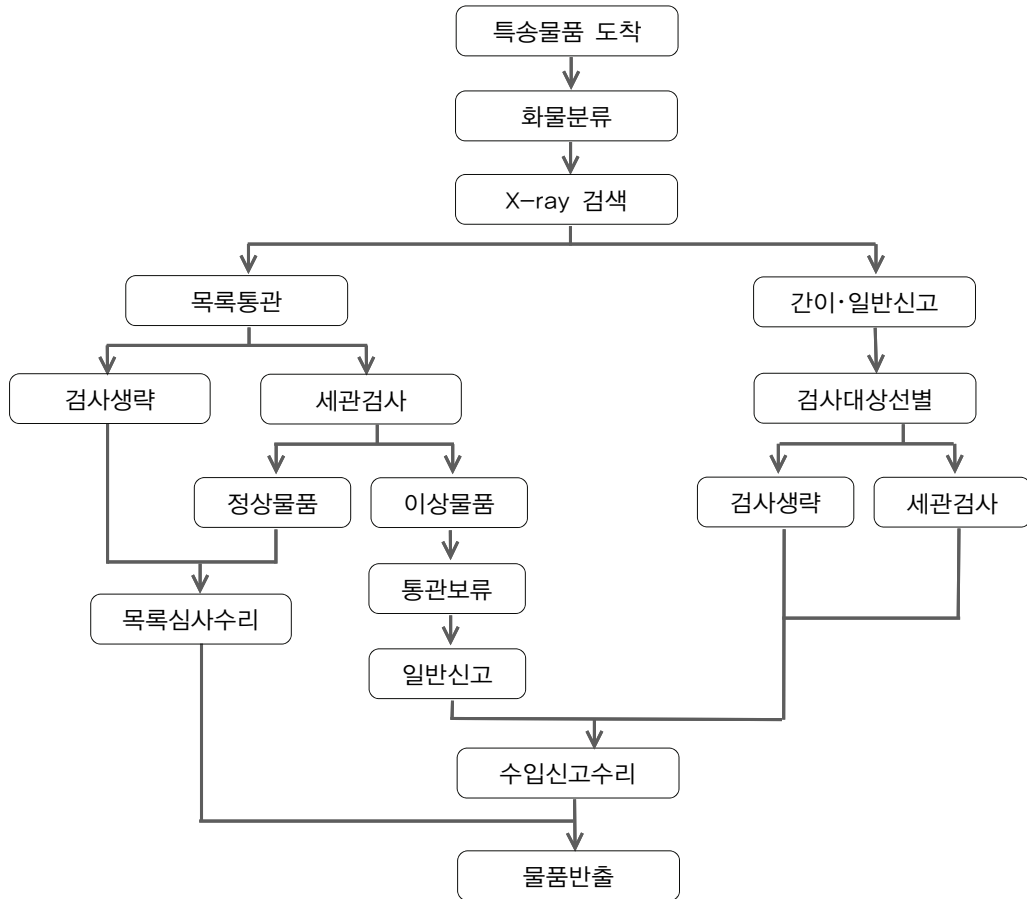
○ 부당면세 등의 가능성이 높거나 통관요건 구비 대상 및 불법물품 반입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후심사를 수행함

○ 특송물품의 통관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가 진행하며, 특송물품에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특송업체가 먼저 대납하고 배송할 때에 세금을 포함하여 통관대행 수수료와 운송료를 받고 있음²⁰⁾

19) 수리된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하여 면세통관의 적정성 등 통관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 2006년 12월 신설

20) 최장우,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Vol. 10, No. 1, 한국관세학회, 2009, p. 240

[그림 II-6] 특송물품 통관절차



자료: 최장우(2009), pp. 239 그림1

Ⅲ.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운영현황

1. 미국

가. 개관

1) 개요

-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는 미국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속으로 테러와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경안보와 적법한 무역 및 국경 출입을 관리하며, 수입우편물 및 내국우편물의 통관은 세관관할 국제우체국(CBP International Mail Branch)과 미국 우체국(US Post Office)에서 관할함
- 전자상거래물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를 적용하고, 수입경로에 따라 우편 또는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규정에 따르며,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법령은 없음
- 미국 관세법(United States Code Title 19 Customs Duties, 이하 '19 USC'), 미국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9 Customs Duties, 이하 '19 CFR')에서 관세의 감면과 간이통관을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소액물품 면세: 19 USC §1321, 19 CFR §10.151~153
 - 특송물품의 통관: 19 USC §1551, 19 CFR §128.0~128.25
 - 간이통관: 19 USC §1498, 19 CFR §143.21~28
 - 우편물의 통관: 19 CFR §145

2) 일반수입신고 절차

- 미국의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Formal Entry)는 수입신고(entry), 세액 납부 및 납세 신고(entry summary), 그리고 관세정산(Liquidation²¹)으로 구분됨
 - 수하인, 수하인의 대리인 및 명의상의 대리인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세신고의 수하인이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로 인한 추가납부 의무로부터 면제받으려면 실지화주신고를 하여야 함

- 수입신고는 수입자가 수입하는 때에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 해당 세관에 제출한 서류 또는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함
 - 물품 도착 후 15일 이내에 세관양식(Customs Form; 이하 'CF') 3461, 수입신고자 자격증명,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기타 서류 및 수취인증명²²을 제출함
 - 수입신고서류 또는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갈음하는 납세신고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승인된 보증회사 또는 금전으로 보증하는 개별담보 또는 포괄담보를 CF 301로 신고하여야 함²³
 - 수입신고 유형은 USD 2,000을 기준으로 일반수입신고(Formal Entry)²⁴와 간소한 수입신고(Informal Entry)로 구분됨

- 납세신고는 관세당국이 세액을 산정하고 수입물품의 통계 및 기타 법령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함
 - 수입신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입하는 때 제출한 수입신고서류와 상업송장 사본 및 CF 7501²⁵을 제출함
 -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때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납세신고서를 별도로 제

21) 소비 또는 환급목적의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최종 산정(computation) 또는 확정(ascertainment)을 말함(19 CFR §159.1)

22) 19 CFR §142.3

23) 19 CFR §142.4

24) 수출판매용 물품(90%), 과일, 채소 및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즉시반출대상,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물품, 자유지역 물품, 운송수단,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25) 19 CFR §142.16

출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때에 납세신고를 해야 함

- 수입자가 반복적으로 신고를 잘못된 경우, 세관장(port director)이 달리 정하는 경우, 쿼터품목 등 특별통관대상물품(special classes of merchandise) 및 관세사가 신고하는 경우²⁶⁾임

- 현품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수량부족 여부, 선적검사 등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함
- 수입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수입자가 산출한 세액을 납세신고를 하는 때에 납부함
 - 납세신고가 수입신고를 대체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부하며, 우편물의 경우 물품이 수취인에게 도착된 때에 납부하여야 함²⁷⁾
- 세관은 일반적으로 물품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 과세가격, 관세 등을 검토하고 기타 추가정보를 수집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경정하여 관세를 정산하고 통관을 완료함
 - 소비를 위해 수입된 물품이 1년 이내에 정산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한 날, 예외적으로 납세신고한 날, 세액조정(reconciliation)을 신청한 날, 보세창고로부터 물품을 반출한 날을 관세정산일로 간주하며 CBP의 별도 통지는 생략됨²⁸⁾

〈표 Ⅲ-1〉 미국의 통관 절차

유형	수입신고(entry)	납세신고(entry summary)	정산(liquidation)
의의	담보(customs bond) 제공 및 물품반출	세액 납부(deposit)	관세당국이 심사를 통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
서식	CF 3461	CF 7501	CF 4333A 또는 EDI notice
기한	물품도착 후 15일 이내	수입신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26) 19 CFR §142.13

27) 19 CFR §141.101

28) 19 USC 1504

- 자동통관시스템은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로, 이는 기존 미국 관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여러 통관관련 시스템을 통합하고 기타 관련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사용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관단일화창구(single window)임
 - 자동위험관리시스템(ATS: Automated Targeting System), 수입화물 통합추적시스템(ACS; Automated Commercial System)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요건확인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의 전자정보의 수집 및 전송을 원활하게 함²⁹⁾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1) 면세기준

-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 이외에 서비스의 종류 및 물품에 따라 행정수수료 성격인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가 부과되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면제됨³⁰⁾
 - 일반수입신고는 USD 25 내지 USD 485, Informal Entry는 전자신고의 경우 USD 2, 직접 수동으로 종이신고하는 경우 USD 6, CBP가 종이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USD 9로 함
- 개인용 물품으로서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수입자의 선적 건에 대하여 선적지에서의 총공정소매가격(aggregate fair retail value)이 USD 200 이하의 물품 등 아래의 경우 관세 및 제반세액을 면세함³¹⁾
 - 9804.00.30, 9804.00.65, 9804.00.70의 물품의 면세적용 비대상자인 미국 거주인의 개인용 또는 가사용 휴대물품으로 USD 200 이하의 물품
 - 특송물품, 개인용 및 가사용 물품, 재수입물품, 서적, 잡지 등, 정부기관용 물품, 외교통용 물품, 재수출 건설자재 등 기타의 USD 200 이하의 물품

29) U.S. CBP,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Overview and Status Update, June 2012

30)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 19 CFR §24.22, §24.23

31) 19 USC 1321, 19 CFR 10.151

- 또한 선의의 선물용 물품인 경우 USD 100 이하인 경우 관세 및 제반세액을 면제함³²⁾
 - 선물은 무상으로 인한 상여 개념이 아닌, 기부업체로부터 증여받은 물품으로서 선물포장 외부에 USD 100 이하의 선물 및 피증여자의 이름이 표기되어야 함
 - 선물 여부는 물품의 특성 및 선적에 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함

2) 면세 금액기준의 조정³³⁾

- 미국은 소액면세 금액기준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음
 - 19 USC §1321(a)(2)(C) and 19 CFR §10.151의 규정에 의하면 소액면세의 조정 권한은 재무부(the Secretary of the Treasury)에 있음
- 현재의 소액면세 한도는 1993년에 USD 200으로 제정된 이래 19년 동안 변경이 없었음
 - 2010년 5월 소액물품 면세한도를 USD 1,000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HR 5375) 및 소액면세 조정과 함께 informal entry 기준을 USD 2,500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HR 1653)이 2011년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음
- CBP는 소액면세한도 상향으로 인한 CBP의 비용분석 중이며 관보에 아직 공지되지 않은 상태임
- 다만, Peterson Institute가 APEC³⁴⁾에 제출한 소액물품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USD 800으로 상향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 상쇄될 것이라 보이며, 전자상거래 수입이 아직 미미하지만 APEC 국가와의 거래가 늘어나 중소기업의 무역시장 진출을 도모할 것이라 예상함³⁵⁾
 - 미국은 부가세와 같은 내국소비세가 없기 때문에 소액한도 상향조정을 통한 부가

32) 19 CFR 10.152

33)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 Number PB117, 2011, 6.

3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1989년),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ASEAN

35) 미국의 특송업체를 통한 소액물품 수입은 연간 3,100만건으로 약 USD 4억 8천만이 수입되고 있음

세 손실의 우려가 없음

다. 통관절차

1) 개요

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의 통관³⁶⁾

-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물품이 수입되는 방법은 우편(the international postal service), 택배(courier) 및 운송인(freight carrier)을 통해 수입되는 세 가지로 구분됨
- 국제우체국(International Post Service)을 통한 수입은 매우 경제적(비용이 적게 듦)이나, 물품가격이 USD 2,000을 초과하는 경우 우편물의 배송이 지연되며, 물품이 분실된 경우 습득하기 어려움
 -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추적번호(tracking number)가 없는 한, 우체국으로 이송된 대부분의 물품은 추적이 어려움
- 택배(Courier Shipping)를 이용한 수입은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배송이 보장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추적번호로 가능하나, 예상보다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하여 물품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
 - 많은 인터넷 구매자들이 보통 물품가격에 수입통관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오해하고 있음
- 화물운송(Freight Shipping)으로 수입된 경우 구매자가 직접 물품의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이 있음
 - 대량구매 물품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운송업체가 물품배송을 지시받지 못한 경우 물품의 최초 수입항에서 적체될 수 있음

36) http://www.cbp.gov/xp/cgov/trade/basic_trade/internet_purchases.xml

- CBP는 물품의 도착통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매자는 직접 수입물품 반입일자를 확인하고 사후조치를 취해야 함
 - 운송인 또는 관세사로부터 물품도착통지를 받지 못해 구매자 또는 관세사가 CBP에 물품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수입물품의 보세창고 보관료를 부담해야 함
 - 물품의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물품은 매각됨

- USD 2,000 이하의 우편 또는 화물운송을 통해 수입된 물품은 대부분의 경우 간이신고를 적용하나, 예외가 있음
 - 예를 들어 상업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다수의 의류(textile items)의 간이신고적용 한도금액은 USD 250 이하로 함(당해 물품이 수량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은 CBP에서 확정하며, 배송방법에 따라 관세납부 방법이 달라짐

나) 간소한 통관절차

- USD 2,000 이하의 상업용 물품, 휴대품 또는 선물용의 비상업용 물품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을 위해 Informal Entry를 적용할 수 있음
 - 관세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반출한 이후에 관세정산이 생략된 1단계의 수입신고 절차라는 점에서 자가정산으로 간주됨
 - 수입자는 미국세관에 관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USD 2,000 이하의 물품을 비롯하여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Informal Entry를 할 수 있음³⁷⁾
 - USD 2,000 이하의 분할선적의 일부 또는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
 - 98류의 면세대상인 가사용품과 개인 휴대품 또는 운송용구
 - 면세대상을 불문하고 구매계약 또는 판매를 위한 용도가 아닌 중고 가사용품과 개

37) 19 CFR 143.21

인휴대품

- 면세대상을 불문하고 제9802.00.40호에 해당하는 비상업용 가사용품과 개인휴대품으로서 USD 2,000 이하의 수리 또는 대체물품
 - 외국에서 사망한 미국 시민자의 USD 2,000 이하의 개인휴대품
 - 도서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에 의해 수입되는 도서류
 - 19 CFR 10.68에 명시된 무대장치, 소품, 상업용 여행 장비 등
 - 별도의 서면 신청에 의해 디자인이 독특하여 상업용으로 판매될 수 없음이 판정된 물품
 - 미국산 물품으로서 USD 10,000 이하의 수리 또는 반품된 물품
 - 소액면세 대상물품
- 원칙적으로 Informal Entry는 CF 368 또는 CF 368A 또는 CF 7501 서식에 의해 신고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상업송장에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제출함³⁸⁾

2) 우편 수입

가) 개요³⁹⁾

-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USD 2,000 이하의 물품은 CBP 공무원이 CBP 신고서류를 준비하기 때문에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택배(courier)를 사용하는 것보다 통관이 용이하며, 관세는 우편집배인이 납부 처리하고, 면세물품의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음
- 우편물(Mail article)은 크게 CBP와 우체국 법령에 의해 물품 거래에만 사용되고, 세관검사를 모두 거쳐야 하는 소포물(parcel post)과 기타 서신(letter-class mail), 상업서류, 인쇄물, 상용견품 등의 Postal Union mail로 구분됨

38) 19 CFR 143.23

39) CBP(2006), pp.15~16

- 소포물은 물품과 가격정보가 표시된 세관신고서가 안전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송장이 동봉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함
- 소포 이외의 우편물은 UPU 서식인 Form C1을 사용하여 배송 전에 개봉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 세관(Customs Service)은 국제우편물 이외에 군수물자우편시스템을 비롯한 특정 국내우편물의 통관 및 검사를 담당함

나) 통관절차

- 미국에 도착한 우편물은 미국 세관관할의 국제우체국으로 이송됨
- 수입금지물품 및 수량제한물품이 아닌 경우, 물품가격이 USD 2,000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 CBP 공무원은 수입신고 서류작업, 관세 부과 및 배송을 위한 우편통관절차를 진행함
- 우편물은 세관신고 및 상업송장을 동봉하여야 함⁴⁰⁾
 - 국제우체국 서식에 물품의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 및 물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각 선적별 적어도 한 개의 우편물에 대해 세관신고를 하여야 함
 - 세관신고요건이 각 선적별 한 개의 우편물 신고 원칙이라 하더라도 개별 우편물에 모든 신고서가 부착된 경우 검사 및 물품의 반출이 신속해짐
 - 물품의 송장가격, 영수증(bill of sale) 또는 판매 또는 위탁이 아닌 경우 선적지에 서의 공정소매가격(fair retail value)명세서 등 물품의 구매가격 및 정확한 설명서를 물품의 표면 또는 안에 안전하게 동봉하여야 함
- 물품가격을 불문하고 port director는 일반수입신고⁴¹⁾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등급

40) 19 CFR §145.11

41) 19 CFR §145.12

물품(special classes of merchandise)을 제외하고는 USD 2,000을 초과하는 모든 우편물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다른 시점에 수입되는 USD 2,000을 초과하지 않는 분할선적 우편물은 USD 2,000을 초과하는 단일 주문 및 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세관에 동시에 도착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일반수입신고의 경우 물품의 도착 사실과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를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USD 2,000 이하의 물품의 경우 세관공무원은 우편물 수입신고서(CF 3419 또는 3419A)를 부착하여 배송 및 관세징수를 위해 국제우체국으로 발송함

- 세관은 수신인이 세관에서 물품을 수취하기로 한 경우 informal entry 서식을 교부함
- 다만, 신고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송장 또는 영수증 등이 동봉되지 않은 경우 언제라도 일반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선물용 물품을 포함한 소액면세 대상물품인 경우 CBP의 수입신고 없이 면세를 적용함⁴²⁾

□ 일부 물품이 포함되는 Sealed letter Class mail은 원칙적으로 수색영장 또는 수취인 또는 발송인의 서면 승인 없이는 개장검사가 제한되지만, 지난 세관검사의 관행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reasonable cause to suspect)'로 간주되어 sealed letter class mail의 개장검사를 허용하였음⁴³⁾

- 탐지견이 마약 또는 폭발물을 감지한 경우
- x-ray검사를 통해 물품 또는 밀수품을 감지한 경우
- 중량, 형상, 느낌 또는 소리로 내용물 가운데 물품 또는 밀수품의 존재를 인지한 경우
- 이전에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물품 또는 밀수품의 소재를 인지한 경우
- 우편물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42) 19 CFR §145.31

43) 19 CFR §145 Annex

- 우편물이 봉투가 아닌 상자, 포장용 상자 또는 포장지로 포장된 경우
 - 발송인 또는 주소가 허위인 경우
- 과세대상 우편물에 대해 CBP는 수수료를 부과하며, 관세 및 수수료는 물품이 배송되는 지역우체국(local post office)에 납부함
- 국제우편물에 대한 내국세는 개별 물품에 대해 부과하며 관세와 같은 방법으로 징수함
 - 시가, 담배, 담배잎 및 제조용 튜브의 면세적용은 가능하지 않음
 -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국제우체국에 의해 또는 가까운 세관에 반송되어야 함
- 우편물신고 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입금지 물품인 경우 압수 및 몰수 대상임
- USD 2,000 이하의 물품이 몰수의 감경대상으로 추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후 감경 대상에 부과된 관세등을 납부한 후 수입됨
 - 우편물의 수입이 거부되거나 배송될 수 없는 경우 우체국장은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표기한 후 발송국가로 반송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우체국으로 전달함
 -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물품은 세관검사를 받은 국제우체국으로 배송되어 세관 공무원의 감독하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표 Ⅲ-2〉 미국 우편물의 통관 유형

구분	대상	신고 서식	제출 서류	수입신고인
Informal Entry	개인용, USD 200 이하 (USD 100이하 선물용품 포함)	-	-	화주, 구매자, 수하인 또는 관세사
	USD 200 초과 USD 2,000 이하	CF 3419	송장사본 또는 사전적하목록으로 대체 가능	화주, 구매자 또는 관세사
일반 통관	USD 2,000 초과	CF 3461, CF 7501	수입신고인 자격증명,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기타 서류 및 수취인증명	수하인 또는 관세사

3) 특송 수입

-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택배, 특송업체 또는 기타 상업서비스를 이용해 수입하는 경우 운송서비스업체에 고용된 관세사를 통해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됨
 - 이 경우 구매자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수수료 이외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송비, 물품취급비용 및 통관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미국은 1989년 특송업체 산업은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을 일정하게 급증시키고자 하는 반면 세관은 세수확보를 보전하고자 함에 있어 이익이 상충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특송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reimbursable service model에 기초하는 제도를 도입함⁴⁴⁾
 - 소액면세에서 징수되지 않은 세수비용은 절약되는 행정인력 및 정보기술자원으로 상계됨
 - CBP 공무원이 24시간 수백만건의 수출입통관을 검사하는 express-consignment carrier facilities는 25곳이 있으며, 190명의 CBP 공무원과 CBP 검역전문가가 함께 식품안전검사를 관리하고 있음

- 2001년 테러 이후 미국은 물품의 도착 이전에 사전 정보 입수, 거래당사자의 명확한 정보·물품의 수입경로에 관한 정보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항공화물에 대해 선적 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받아 ATS(Automated Target System)가 입수한 정보를 상이한 중량 및 가격을 다수의 정보항목에 부여하고 알고리즘을 가동시켜 그 등급을 매김
 - 이 등급을 사용하여 CBP 공무원은 표적대상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음
 - 또한 특송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x-ray 장비, 방사선 감지기 등 훨씬 고도화된 기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적법한 물품의 신속한 통관처리를 가능하게 함

44) WCO, Best Practices of Implementation of a Trade Facilitation Measure(United States), 2010. 10.

○ 소액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하여 행정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제도 운영의 성공요소 중 하나임

□ 특송물품의 업무처리 성격상 업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관공무원간의 교류 및 상호관리를 통해 검사대상 추출 및 물품반출 관련 지식을 일관성 있게 공유할 수 있고, 특송업체와 관세당국 간의 협업이 원활한 제도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권고함

가) 특송업자 요건

□ 특송화물(Express Consignments)이란 적하목록의 첨부 여하를 불문하고 특송업자 또는 운송인에 의해 미국 관세영역 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의미함⁴⁵⁾

□ 특송업자 또는 운송인(Express Consignments Operator or carrier)은 택배(courier)를 포함한 고도의 통합된 관리하에 복합운송을 이용하여 특급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임. 세관에 의해 지정되어야 하며 CF 301로 관세담보를 신고하여야 함⁴⁶⁾

□ 특송화물을 수입신고, 검사 및 반출하는 시설은 세관에 의해 지정되며, 중앙허브시설(Centralized hub facility)과 특송업자시설(Express consignment carrier facility)로 구분됨

○ 중앙허브시설은 분리된 단독 목적의 시설로서 CBP의 운영시간 이외에 가동되며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검사 또는 반출이 이루어짐

○ 특송업자시설은 별도의 또는 공동의 특화된 시설로서 특송물품의 검사와 반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설임

□ 허브시설 또는 특송업자시설은 세관에 신청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⁴⁷⁾

○ 신청서의 내용은 국제화물시설 세부내역서, 특송화물의 제반 특성 기술서, 추정

45) 19 USC 1551, 19 CFR §128.1

46) 19 CFR §128.22

47) 19 CFR §128.11~13

취급 물량, 처리비용 신청서, 임직원 명단, 운영시간, CBP의 제반 통관시스템⁴⁸⁾을 이용하여 처리한다는 계약서로 이루어짐

- 세관의 승인 거부,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하여 신청인은 통지 3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권고 및 청문의 권리가 있음

□ 특송업자시설은 분기별로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운송인 또는 운영인의 명단과 시설 사용기간을 CBP의 Revenue Division에 통보하여야 함

- 특송업자는 중앙허브시설 또는 특송업자시설의 설립, 변경 또는 이동의 처리비용⁴⁹⁾을 납부하여야 함
 - 특송업자는 또한 개별 B/L당 USD 1의 행정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USD 100 초과 USD 2,000 이하의 informal entry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 기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나) 통관절차⁵⁰⁾

□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도착전 적하목록 정보 제출 → 허브 또는 특송업자시설에 물품 도착 → CBP에 물품 제시(present) → 원산지별 특송물품 및 적하목록 분류 → 수입신고 → 관세 등 납부 후 물품 반출로 이루어짐

□ 특송업자 또는 운송인은 물품의 도착 전에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운송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적하목록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입신고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 적하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물품의 원산지, 송하인 이름, 주소 및 국적, 최종수하인 이름 및 주소, HS코드,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으로 함

48) 자동 통관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System, ACS), 자동적하목록시스템(Automated Manifest System, AMS), 물품선별(Cargo Selectivity), Statement Processing, 관세사 연계 시스템(the Automated Broker Interface System, ABI)

49) 31 USC 9701

50) 19 CFR §128.21~25

- USD 200을 초과하는 일반수입신고 및 informal entry 대상물품은 수량, 중량 및 가격만 기재함
- 모든 특송물품의 수입요건은 세관의 제반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되어야 하며, 전자통관시스템의 처리를 위해 바코드 인식이 가능한 수입번호(entry number)가 제출되어야 함
- 특송업자 또는 운송인이 수입한 USD 2,000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informal entry를 적용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일반통관절차 서식을 이용한 통관절차임⁵¹⁾
 - 수입신고인은 화주, 구매자 또는 화주, 구매자, 수하인으로부터 위임된 관세사로 함
 - USD 2,000 이하의 개별 선적 건을 통합하여 한 건의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
- 수입신고인은 허브 개시 또는 특송물품 운송시설의 가동 이전에 일반수입신고 서식인 CF 3461을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을 반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고 납세신고서 CF 7501⁵²⁾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신고서의 제출서류 대신에 송장사본 또는 사전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음
 - 세관은 필요한 경우 일별 또는 선적별로 각 해당하는 선적건에 대해 CF 3461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상업송장 또는 사전적하목록, 수입번호와 기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개인용의 USD 200 이하의 물품 및 USD 100 이하의 선물용 물품인 소액물품의 경우 B/L 또는 각 B/L에 해당하는 적하목록 리스트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로 간주함⁵³⁾
 - 화주, 구매자 또는 관세사 이외에 수하인도 수입신고인이 될 수 있음
 - 사전적하목록을 수입신고로 사용하는 경우 적하목록에서 별도로 금액별로 분리해야 되며 HS코드 및 납세신고서는 요구되지 않음

51) 19 CFR §143.23 (i)

52) 일반적인 informal entry 서식은 CF 368/368A 또는 CF 7501이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고문안을 기재한 상업송장 제출이 가능함

53) 19 CFR §143.23 (j), 우편물 또는 휴대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 리스트의 기재항목은 물품의 원산지, 송하인 이름, 주소 및 국가, 최종 수하인의 이름, 주소 및 물품의 세부설명, 수량, 중량 및 가격

〈표 Ⅲ-3〉 미국 특송물품의 통관 유형

구분	대상	신고 서식	제출 서류	수입신고인
Informal Entry	개인용, USD 200 이하 (USD 100 이하 선물용품 포함)	B/L 또는 적하목록 리스트	-	화주, 구매자, 수하인 또는 관세사
	USD 200 초과 USD 2,000 이하	CF 3461, CF 7501	송장사본 또는 사전적하목록으로 대체 가능	화주, 구매자 또는 관세사
일반통관	USD 2,000 초과	CF 3461, CF 7501	수입신고인 자격증명,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기타 서류 및 수취인증명	수하인 또는 관세사

4) 화물운송 수입

- 해상운송, 항공운송 또는 내륙운송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수입물품으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운송업체 및 관세사로 하여금 문전으로 배송될 것을 지시하도록 요청해야 함
 - USD 2,000 이하 물품에 대해서만 물품이 구매자의 주소지와 가까운 곳의 수입항으로 이송되도록 요청하여 직접 통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음
- 화물운송으로 수입된 경우 직접 신고한 경우 직접 납부하며, 통관을 대행한 운송인 또는 판매자의 관세사가 납부한 관세 등을 상환함

2. 호주

가. 개관

1) 개요

- 호주의 국경관리 및 보안 관리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세 등의 부과, 징수의 책임 기관인 ACBPS(The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이하 ‘ACBPS’)와 농수산물 등의 검역,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DAFF Biosecurity(Department of Agricultural, Fisheries and Forestry Biosecurity)가 관할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증에 기인하여⁵⁴⁾ 4년 동안 연간 19.5%씩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2년간은 연 36%씩 증가함⁵⁵⁾
 - 2006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호주 국제우체국을 통해 수입된 우편(EMS, 2kg 이하의 packet과 2kg 초과 소포물)물량이 104% 증가함
 - 향후 온라인 해외구매는 연간 7.6% 내지 20.4%의 증가율이 예상됨
 - 상업용 및 개인용 소매물품 중 41%는 주로 의류이며 전자제품이 19%, 나머지는 기계부분품, 스포츠용품, 서적, 잡지, 의료기기, CD, DVD 및 식품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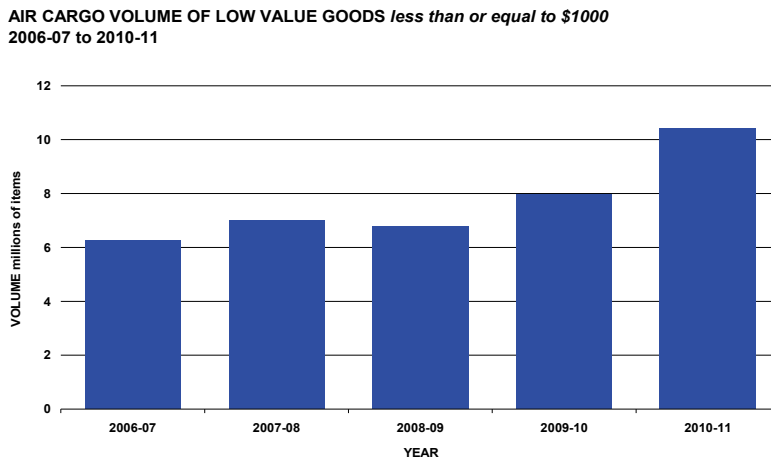
-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소매면세 및 간이통관 절차는 우편물에 관한 국제협약 및 내국법령인 관세법(Customs Act 1901) 및 관세법 규정(Customs Regulations 1926),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95), 부가세법(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매면세: 관세율법 Schedule 4 Items 32A and 32B, 관세법 규정 31AC, 부가세법 s42-5

54) 온라인 쇼핑의 수요자 중심의 안전성 보장 및 호주화 달러의 상승세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시장이 확산되었음

55) “Low Value Parcel Processing Taskforce,” Interim Report, 2012. 3.

- 국제우편물의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Division 38 - Subdivision 38-Q
- 간이통관절차: 관세법 S68(1)(e),(f), 관세법 규정 31AB and 31AC

[그림 Ⅲ-1] 호주의 항공운송 소액물품 수량 추이



자료: Interim Report, Low Value Parcel Processing Taskforce, 2012. 3.(p. 7)

<표 Ⅲ-4> 호주의 운송방법에 따른 수입 동향

(단위: 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우편물	일반신고	22,934	23,434	21,739	19,056	17,318
	소액면세	628	571	432	262	233
	약식 SAC	-	-	-	-	-
	화물신고통관 ¹⁾	-	-	-	-	-
항공화물	일반신고	1,445,639	1,529,759	1,453,677	1,508,979	1,596,476
	소액면세	103,403	122,741	109,396	131,394	155,553
	약식 SAC	179,809	147,239	121,655	119,299	137,849
	화물신고 통관	5,977,131	6,731,434	6,534,604	7,669,649	10,116,252
해상화물	일반신고	1,370,582	1,459,050	1,355,177	1,450,112	1,542,325
	소액면세	14,751	16,052	12,635	16,707	19,234
	약식 SAC	11,674	11,996	10,154	10,663	10,574
	화물신고 통관	437	442	537	576	733

주: 1) cargo report clearance

자료: LVPPT(2012), Appendix G

2) 일반 수입통관절차⁵⁶⁾

- 화물 신고인⁵⁷⁾은 수입물품을 호주로 반입하기 전에 ACBPS에 전자적으로 물품에 관한 정보를 화물신고(cargo report) 하여야 함⁵⁸⁾
 - 이 정보는 ACBPS와 호주검역국(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⁵⁹⁾의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에 중요한 결정 기준임

- 수입자는 통합화물관리시스템인 ICS(Integrated Cargo System)에 등록하여 N10서식의 일반수입신고를 하며 수동으로 신고할 경우 ACBPS가 ICS에 수입자를 대신하여 입력함

- 모든 수입신고 자료가 유효하게 접수된 경우 다음 중의 하나로 처리됨
 - 즉시 통관될 수 있는 녹색신고(Green line)로 처리되어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서를 받음
 - Green line으로 분류된 수입신고 물품은 검사 없이 관세 등을 납부하면 통관됨
 - 수입신고가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적색신고(Red line)로 처리되어 수입자 또는 관세사는 해당세관에 상품에 대한 생산정보 또는 상업서류 등을 제출함
 - 적색신고는 보통 품목분류의 오류, 검역물품이 검역을 받지 않았을 경우, 가격이 송품장 내용과 다른 경우 등 모든 사항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더 필요한 경우임
 - 위장수입물품, 관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물품, 마약, 검역대상물품 등 수입금지 또는 제한 물품(Community Protection Check), 관세사, 수입자가 신고물품이 불명확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물품인 황색신고(Amber line)에 대하여 검사대상임을 표

56) 정재호, 마정화, 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한국조세연구원, 2009, pp. 54~62. 일부 인용 및 재구성

57) 화물신고인(cargo report)은 운송회사, 용선자, 화물국제운송업자 등임

58) Import Cargo Reporting Overview, Australian Customs Service, 2007

59) DAFF Biosecurity 소속 Biosecurity Services Group의 일부로서 COMPILE 시스템에 연결되어 검역물품을 처리함

시함

-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 전산에 의한 자동 관세납부시스템인 EFT(Electronic Fund Transfer)망을 통하여 관세를 납부함
 - 우편의 경우 반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ACBPS의 신고처리가 이루어짐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1) 면세기준

- 수입물품은 관세, GST(Goods and Services Tax), WET(Wine Equalisation Tax), LCT(Luxury Car Tax) 등이 부과됨
 - 관세는 일반적으로 5%, GST는 10%, WET는 29% 등으로 함
- 세금 이외에도 수출입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리비용인 IPC(Import Processing Charges)를 납부해야 함
 - IPC는 관세법 및 「Import Processing Charges Act 2001」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 처리와 위험관리를 위한 행정당국의 비용회수(cost recovery) 성격의 수수료로서, ACBPS, DAFF Biosecurity 및 호주우체국(Australia Post) 등 기관, 수입물품의 처리방법에 따라 부과됨⁶⁰⁾
- 소액물품(Low Value Goods)은 개인용, 선물용 등의 용도를 불문하고 AUD 1,000 이하인 경우 관세, GST, IPC가 면세됨
 - 선물용 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는 2008년 10월 폐지되어 선물, 기부 및 무료로 공급되는 물품이 AUD 1,000을 초과하거나 주류 또는 담배인 경우 관세 등이 부과됨
 - 특정 수하인의 경우 우편물이 선물용이면 우편물을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지

60) 전자신고의 경우 USD 50(해상화물), USD 40.20(항공화물 또는 우편), 수동 종이신고의 경우 USD 65.75(해상화물), USD 48.85(항공화물 또는 우편)으로 함

만 아직까지는 1회성 선물용 물품에 대한 감면제도는 없음

- 소액물품은 주류 또는 담배제품 및 수입금지 또는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배제함
 - 수입금지물품은 마약, 레이저포인터, 허브조제품을 포함한 약물, 부당하거나 공격적인 내용의 비디오, DVD, CD와 서적, 멸종위기종 또는 고양이 또는 개의 털로 만든 동물 제품, protrusion dog collars, tablet presses 등이 있음
 -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가스 및 전기용품, 바비큐, 개인 몸치장 물품 등 안전 및 기술표준 등의 수입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함

2) 면세 금액기준의 조정

- 호주는 2005년 연간 AUD 1,200만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탈세위험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여 AUD 1,000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산업별 수입부과금에 의한 세입 한도와 물품의 원활한 이동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해상 또는 항공화물의 한도를 종전의 AUD 250에서 1,000으로 책정함
- 이후 소액물품을 해외로부터 온라인방식으로 수입하여 국내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0년 12월 생산성 본부(Productivity Council)에서 소액면세 한도의 조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함
 - 호주의 소액면세 한도는 영국의 경우 부가세: 15파운드(AUD 23), 관세: 135파운드(AUD 205) 및 캐나다의 경우 부가세 및 관세: CAD 20(AUD 19) 한도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12월 9일 생산성본부의 『간접세 협정의 지속가능성 및 적정성에 관한 보고서』 제7장에서 소액면세 한도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국내물품과의 과세형평성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면 우선 우편물 통관의 신속화에 초점을 두는 것을 권고함
 - 조세형평성으로 인한 효율이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행정비용을 초과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 ACBPS는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소액물품의 일반적인 위험관리 절차와 고위험관리군을 선별한 위험관리 절차를 병행하여 법규준수도 강화활동을 하였음(Low Value Threshold Compliance Enhancement Campaign Report, 2012. 6)
- CBP가 처리하는 소액물품의 수입이 많아지면서 시스템과 행정절차가 소액물품의 한도조정에 민감해지고 있으며, 소액면세의 하향조정으로 인한 행정비용 결정요소와 연간 행정비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Ⅲ-5〉 소액물품의 면세기준 하향효과

구분	행정비용 결정 요소	법규준수도 관리비용
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 및 위험관리가 필요한 우편물의 수 - 유치 및 납세심사가 필요한 우편물의 수 	연간 AUD 1,900만 (x-ray 포함, 공무원 인력 비용)
해상 또는 항공화물	법규준수도 관리감독의 범위 (the extent of compliance monitoring)	연간 약 AUD 1백만 (주로 관리인력 비용)

- 캠페인 기간 동안 ACBPS는 국제우편물 3만 3천건의 물리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를 수행하고 3만 2천건의 해상 및 항공화물 신고 건에 대해 심사함
 - 국제우편물 가운데 위법 비율은 0.1%(고위험 집중관리대상은 3%)였으며, 해상 및 항공화물 신고 가운데 위법 비율은 2.0%(고위험 집중관리대상은 9%)로 나타남⁶¹⁾
 - 이 중 1,942건의 소액물품의 위법 사항을 발견하였으며, 대부분의 오류사항 1,620건은 과세가격의 저가신고였음
 - 대부분의 저가신고 1,312건은 해상 및 항공화물에서 발생하였으며 주된 위법사유는 대량주문을 개별주문으로 분할선적하고 소액물품으로 저가 신고한 것임

61) 전체적으로 법규 위반 수준이 낮았지만, 공급자(suppliers)는 주로 미국, 중국(홍콩 포함)이었으며 품목(commodities)은 기본세율 5%보다 높은 10%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섬유(textile), 의류(clothing), 신발, 전자제품(electronic equipment) 등으로 나타남

- 호주 정부는 간접세 징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소매물품 수입에 관한 사무처리의 개혁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Taskforce 팀을 구성하여 2012년 7월 최종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현재 2012년 3월 기준의 중간보고서가 호주관세청 웹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임

다. 통관절차

- 인터넷을 통한 구매에 의한 수입물품에 대한 별도의 통관규정은 없고 일반 또는 간소한 수입통관 절차를 따르며 우편물을 제외한 소매물품은 간소한 통관절차에 의함
-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은 호주에 도착하는 항공운송, 해상운송(Cargo - Air and Sea) 및 국제우편(International Mail)으로 도착할 수 있음⁶²⁾
 - 해상운송화물 및 항공운송화물은 주로 특송업체(Express Couriers)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s)와 같은 전문서비스제공자가 수입통관처리를 관리함
- 선물용, 개인용, 상업용, 구매장소, 판매 또는 유통목적에 불문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물품은 ACBPS에서 screen, x-ray 및 현품검사를 실시함
 -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이 수입금지 또는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국제적으로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호주 세관에 의해 유치 또는 몰수될 수 있음
- 해외의 한 화주로부터 호주의 동일한 주소에 도착하는 여러 개의 소포는 모든 소포의 전체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됨
- 어떤 경우에는 호주 회사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이 해외에서 공급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구매자가 될 수 있음

62) <http://www.customs.gov.au/site/page5549.asp>

1) 우편 수입⁶³⁾

가) 개요

- 2001년 구제역 이후 2006년 4곳⁶⁴⁾의 국제우편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x-ray검사와 탐지건을 통한 모든 우편물의 100% 화물심사(screen)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소액면세가 되는 국제우편물은 ICS를 통해 SAC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도착 이전에 물품 정보를 입수할 수 없고 세관신고서의 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우편물 통관심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ACBPS는 수입우편물의 물량이 많아 현재 모든 물품의 가격을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AUD 1,000을 초과하는 물품인지 여부와 위험관리 측면에서 마약, 무기 및 총기와 같은 고위험물품에 주력하여 물품을 검사하고 있음
 - 2천만건의 소포가 국경안보와 세수확보를 위해 검사(inspect)되며, 이 가운데 약 2만건이 AUD 1,000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임
- 현재 세수확보를 위해 물품을 심사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ACBPS가 과세대상 물품을 선별하기 위해 각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는 집중적인 물리적 절차(Intensive Physical process)가 이루어지고 있음
 - 물품이 호주 국제우체국의 우편물 게이트웨이 가운데 한 곳에 도착하면 우편물이 담긴 대형 케이지와 가방이 컨베이어벨트에 실림
 - 벨트를 따라 이동하면서 세관공무원은 개별포장에 부착된 우편물신고서의 정보를 확인하여 간이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함
 - 세관공무원은 과세가격 이외에도 위험물품인지 여부도 동시에 확인함
 - 물량이 많아 세관공무원이 일일이 소포에 부착된 표지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기

63) ACBPS, Minute Paper, 2011. 6.

64) 2012년 8월부터 국제우편물의 통관이 Sydney 한 곳으로 일원화됨, Australian Customs Cargo Advice No.2012/12

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온라인 시장의 발전으로 인한 우편수입물의 증가로 현재 화물의 도착 후 ACBPS와 호주 우체국의 복잡하고 느린 통관절차, 소액물품 한도조정을 통한 GST의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추정되는 바로는 ACBPS에서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을 수동으로 (manually) 통관하는 데 최대 45분이 소요됨
 - 생산성본부는 2009년과 2010년의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면세한도를 AUD 800으로 낮출 경우 과세대상 우편물의 수는 16만개, 500으로 낮출 경우 1,200만개, 100으로 낮출 경우 1,600만개로 추정함⁶⁵⁾

나) 통관절차

- 우편물 행낭이 항공 또는 해상운송에 의해 도착하여 호주 우체국 시설에 운송됨
- 다른 수입물품과 달리 소액면세가 되는 국제우편물은 전자신고를 할 수 없고, UPU와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UPU)과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간의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우편은 물품의 표면에 부착된 종이 신고에 의해 통관됨
 - 신고서의 양식 및 발신자 및 수신자에 대한 내용 및 물품의 가격, 세부내역 등 신고내용은 국제협약에서 정함
 - 우편물의 경우 물품의 수입신고 책임은 AUD 1,000 이하 물품의 경우 송하인에서 AUD 1,000 초과인 경우 수하인으로 이전됨⁶⁶⁾
- 호주 우체국은 ACBPS 및 호주검역국으로부터 받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위험물품을 분류

65) LVPPT(2012), p. 17

66) LVPPT, Interim Report, 2012. 3.

- 저위험물품은 호주 우체국에 반출되어 추가 분류 및 우편물 수신자에게 배송되기 위해 분류센터로 이송됨
 - 모든 기타물품은 컨베이어벨트로 이동되며 이들은 X-ray검사를 통해 위험물품 여부 및 관세 등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심사(assess)함
- 위험물품 및 관세 등 부과대상으로 확인된 물품은 재검물품(examination)으로 분류되거나 호주 우체국이 세관으로 하여금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우편물이 아무 위험이 없다면 국내배송을 위해 호주 우체국으로 반출됨
- 물품이 재검물품으로 분류되어 관세 등의 납부를 하여야 하는 물품이라면 ACBPS는 호주 우체국의 업무위탁을 통해 관세 등을 징수함
- 호주 우체국은 시스템에 세부상황을 기록하고 수입자에게 송부된 통지서 사본을 세관에 송부
 - 호주 우체국은 필요한 절차와 정보와 함께 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는 세관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또는 관세사에게 수입 신고 대행(대부분의 국제우편물 수입자는 종이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함)
 - 세관은 ICS 시스템에 수동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관세 등을 산정하여 납부할 관세 등을 고지함
 - 수입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호주 우체국은 물품을 배송함

3) 특송 수입⁶⁷⁾

가) 개요

- 국제 우편에 의해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 항공운송 또는 해상운송에 의해 수입된 AUD 1,000 이하의 물품은 SAC(Self Assessed Clearance) 신고를 하여야 함⁶⁸⁾

67) ACBPS, Minute Paper, 2011. 6.

68) 세관은 국제우편물 또는 해상 및 항공화물 중 선물용 물품의 비중에 대한 통계가 없는데, 이는 세관에 제출하는 일반수입신고 및 SAC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 SAC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는 물품의 가격이 AUD 1,00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과 ACBPS 또는 호주검역국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으나 수입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해당절차를 따라야 함
 - 관세사 또는 다른 서비스제공업자를 고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 SAC 신고를 위탁하거나, 화주가 직접 인증서를 소지하고 ICS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음
 - SAC 신고는 수입자 또는 관세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관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없음
- SAC 신고의 유형은 수입자가 ICS 시스템에 신고하는 정식(Full Format) SAC 신고와 약식(Short Form) SAC 신고 및 화물신고인이 화물신고하는 때에 SAC란에 체크하여 간단히 신고하는 cargo reported SAC 신고가 있음
- 다음의 경우 SAC 신고 대상 물품들은 정식 SAC 신고하는 경우 통관이 신속해짐
 - 감면 적용 대상
 - 허가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물품
 -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주류 또는 담배, 대량 탁송물품의 일부인 경우, 상업용인 경우)
 - 약식 SAC 신고는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루어짐
 - 주류 또는 담배를 포함한 수입물품의 관세 및 부가세 납부에 사용될 수 있음
 - 전자인증서를 소지하고 ICS에 등록된 사용자는 약식 SAC 신고를 할 수 있음
 - SAC 신고 서비스 제공업자 및 관세사는 이런 유형의 SAC 신고를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SAC 신고는 화물신고인이 항공화물의 화물신고를 완료하면 이루어지는 cargo reported SAC 신고의 형태로 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을 제외한 소액물품에 대해 가능함
- 화주를 대신하여 cargo reporter가 SAC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화주가 신고를 하여야 함

- 화주의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carrier or Freight Forwarder)는 일반적으로 화주에게 수입물품이 도착한 시기와 간이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통지함
 - 물품가격이 AUD 1,000 이하라는 사실이 표기된 B/L이 있다면 화물신고에 물품을 ‘소액물품(low value goods)’으로 표기할 수 있음
 - 소액물품은 화물신고에 제시된 정보에 의해 통관처리됨
 - 이런 방식의 신고의 경우 더 이상의 의무는 없음
- AUD 1,000 이하의 대량의 항공수입화물에 대한 특별신고제도(Special Reporter Scheme)는 일정 요건을 갖춘 특별신고인에게 요약화물신고(abbreviated cargo report)만으로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⁶⁹⁾로 일명 HVLV(High Volume Low Value)제도로 불림
- 소액물품을 특정 mail order house로부터 월 최소 1,000건 이상의 화물신고를 하는 수입자에게 신청 및 승인을 통해 2년간 특별신고를 허용해 줌⁷⁰⁾

나) 통관절차

- 수입물품은 항공, 해상운송, 국제우편 또는 다른 운송수단(예: 파이프라인)을 통해 호주에 도착하기 전 화물신고인의 화물신고를 ICS 시스템에 전송함
- 화물신고에 제공된 정보는 ICS 화물위험평가(CRA: Cargo Risk Assessment)모듈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
- 화물과 profile을 대조하여 통관보류 및 심사를 거쳐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화물신고와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물품 설명 및 가격의 최소한의 정보와 함께 SAC신고

69) 호주관세법 64AB, mail-order house means a commercial establishment carrying on business outside Australia that sells goods solely in response to orders placed with it either by mail or electronic means.

70) Australian customs notice NO.2007/10

- 특정 소액물품은 이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없음

- 물품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하는 때에 수입자가 SAC신고(전자인증서를 소지한 자에 의해 전자적으로 신고해야 함)를 하거나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가 SAC신고를 함

- 국제우편 또는 다른 운송수단(예: 파이프라인)에 의해 도착한 물품이 아닌 이상 두 유형의 신고내용은 화물신고와 일치하여야 함
 - 두 유형의 신고절차는 CRA 모듈에 의해 처리되고 profile을 대조하여 화물과 불일치하는 경우 유치 및 심사를 거쳐 화물조사 또는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함

- 물품을 유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SAC신고는 수리되어 물품은 배송될 수 있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 관세 등이 납부되면 일반수입신고는 수리되어 물품은 배송될 수 있음

- 관세 등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통관이 신속하도록 산업별 통관관세사 서비스가 사전 납부함
 - 대납된 관세 등은 사후에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수입자에 의해 상환됨

3. 일본

가. 개관

1) 개요

- 일본에서 관세 등의 징수 및 수출입통관 등의 관세행정을 관할하는 부처는 재무성 산하 관세국으로 소관업무의 범위는 우리나라 관세청과 유사하며, 조직 인원은 우리의 2분의 1 정도로 운영되고 있음
- 국제우편은 일본우편사업주식회사(郵便事業株式会社, Japan Post Service Co., Ltd.)⁷¹⁾에서 취급함
- 개인 수입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외국 제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의 통신 판매 회사, 소매업체, 제조업체 등에서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⁷²⁾
 - 개인 수입의 형태로는 ① 수입자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을 직접 외국의 통신판매 회사, 소매업체, 제조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방법, ② 수입 대행업체에 주문하여 그 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전자상거래 구매 물품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물품 운송은 ① 국제우편, ② 국제택배(특송), ③ 일반화물로서 선편 또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⁷³⁾
 - 일본에서는 특송이라는 명칭 대신 택배(宅配)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

71) 일본우정주식회사(日本郵政株式会社, Japan Post Service Co.,Ltd)의 자회사 중 하나이며, 우편사업주식회사 외 기타 자회사로는 우편국주식회사, 유초은행주식회사, 간포생명보험주식회사가 있음
일본우정공사는 2007년 10월 민영화되었으며, 위 4개사(社)의 주식을 소유한 지주회사가 되었음

72) 세관수속 FAQ 3.개인수입통관, 3001

73) 세관수속 FAQ 3.개인수입통관, 3001

- 일본에는 「전자상거래 및 정보상품 거래 등에 관한 준칙」⁷⁴⁾이 존재하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 구매 물품 통관에 관한 내용은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세법에는 우편물 통관에 관한 내용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특송품 통관 관련 규정은 없음
- 일본에서도 우편과 택배가 수입금지 물품 및 신종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가 되고 있으며, 이들 물품에 대한 수입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2011년, 터키로부터 수입된 항공 소액급송화물에서 외장 크레이트의 바닥판에 2kg의 은닉된 각성제를 적발하였음
 - 같은 해, 관세국은 중국으로부터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에서 마른 김 속에 은닉된 위조 수입인지 2,500매를 적발한 바 있음

〈표 Ⅲ-6〉 도쿄세관의 주요 불법 마약 적발 상황

(단위: 건, g, %)

		2007	2008	2009	2010 1~12월	2010 1~9월	2011 1~9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각성제	건수	44	66	102	108	67	112	167.2
	중량	85,011	68,970	140,196	257,365	149,311	213,236	142.8
대마초	건수	48	38	58	23	17	21	123.5
	중량	52,479	28,299	37,906	1,537	1,487	2,590	174.2
향정신성 의약품	건수	7	8	5	9	7	9	128.6
	중량	3,324	3,038	2,195	3,569	2,509	4,735	188.7

자료: 일본 관세국(www.customs.go.jp)

2) 일반수입통관 절차

- 일본의 수입통관은 ① 화물의 수입항 도착 → ② 보세 지역으로 화물 반입 → ③ 수입 신고, 납세신고 → ④ 세관의 심사, 검사 → ⑤ 관세 등 납부 → ⑥ 수입 허가 → ⑦ 보세 지역으로부터 화물반출 → ⑧ 수입자 화물 인수 순서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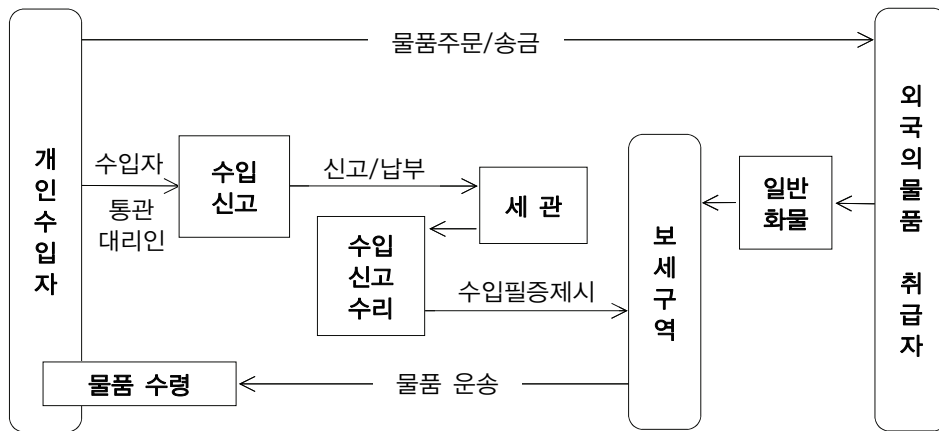
74) 2011년 6월 개정,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관할

- 납세 의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수입하는 자(일반적으로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상 기재된 수화인)이며, 수입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수입자를 대신하여 통관업자가 신고하고 있음
- 수입 신고 시 필요서류는 송장(Invoice),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보험료명세서, 운임명세서, 포장명세서 등이며, 이 밖에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허가 및 승인증, 원산지증명서, 감면세 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서는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과세표준과 품목번호 및 세율·세액의 정확성 여부,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사받게 됨
- 일본에서는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이라는 수출입·항만관련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수출입 등 관련업무 및 이와 관련된 화물관리 등의 민간업무를 처리, 세관 수출입신고의 약 98%가 전자문서로 처리되고 있음
 - NACCS에 입력된 정보는 세관의 CIS⁷⁵⁾를 통해 리스크가 높은 화물, 즉 불법수출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화물과 리스크가 낮은 화물의 구분을 명확하게 선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 NACCS의 구분에는 3가지(구분 1: 서류심사 생략 즉시허가, 구분 2: 서류심사, 구분 3: 화물검사)가 있으며 구분 3으로 분류된 물품은 X-Ray검사를 함
 - 통관업자가 물품을 X-Ray 기계가 있는 장소에 반입, 세관이 검사함
 - 대형 통관업자(신고건수가 현저히 많은 업자)는 그 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장치장에 세관이 X-Ray를 세관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예: FEDEX, DHL, UPS, 기타 공항에 있는 대형 보세장치장)
- 개인물품이라 할지라도 일반 수입 시에는 일반 화물의 통관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함

75) Customs Intelligence Data Base System, 통관정보 종합판정 시스템

- 운송회사가 수취인에게 도착 사실을 통보하며, 화주는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통관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세관에 신고, 통관 완료 및 세금 납부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함

[그림 Ⅲ-2] 일본 개인물품 일반 수입 절차도



자료: 일본 관세국(www.customs.go.jp)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 일본은 과세 가격이 1만엔 이하의 수입 화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면제됨
- 과세가격 1만엔 이하의 소액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무조건 면세⁷⁶⁾를 규정하고 있으며, 10만엔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簡易稅率)을 적용함⁷⁷⁾
 - 1건을 분할하여 수입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해당되는 모든 화물의 과세가격을 합계한 것을 기준으로 함
 -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 가죽가방, 핸드백, 장갑 등 편물제의

76) 관세정률법 14조(무조건면세) 18호

77) 관세정률법 3조의 3

류(티셔츠, 스웨터 등), 스키신발, 구두와 바깥 바닥이 가죽인 신발류 등이며 이들 품목은 1만엔 이하여도 관세와 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그러나 소액화물의 경우에도 주세 및 담배세·담배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가죽가방, 팬티스타킹·타이츠, 장갑·신발, 스키신발, 니트 의류 등은 개인적인 사용에 제공되는 선물로 거주자에게 주어진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가격이 1만엔 이하라도 관세 등은 면제되지 않음
 - 술·담배 등에 대한 소액면세는 관세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주세와 담배세 등 내국 소비세에 대하여는 과세가격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일지라도 과세대상이 됨⁷⁸⁾
- 일본의 관세정률법에서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선물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면세를 인정하고 있음⁷⁹⁾
 - 단, 만일 1송장에 관련된 화물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송품장에 관련된 모든 화물의 과세가격을 합제한 것으로 함

다. 통관절차

1) 개요

- 일본의 관세 관련법령에는 특송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으며, 특송 물품은 일반 화물과 동일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일본의 1만엔 이하 소액면세기준은 우편 및 특송수입물품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10만엔 이하의 우편 수입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있음
- 또한, 과세가격 20만엔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통관제도를 이용하거나, 화물 운

78)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4조 21호 (5)

79) 관세정률법 14조(무조건면세) 18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4조 21호(소액화물 무조건 면세) (1)

송장에 추가 사항을 기입함으로써 수입신고서를 대체하는 등의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2) 간이통관제도

가)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 과세가격 20만엔(한화 약 230만원⁸⁰⁾ 이하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소액화물 간이통관’ 취급을 받아 간소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음⁸¹⁾
 - 소액화물 간이통관 취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소액화물 간이통관 취급(少額貨物簡易通關扱)’으로 표시하여 신고하면 됨
 - － 신고유형부호 및 항구, 적재선명, 입항날짜, 선하증권 번호, 항구부호, 선적의 부호, 무역형태별 부호, 원산지 부호, 수입자부호, 감면세 조항 적용구분 부호 등의 각란에 기재 생략이 가능함
- 이 제도는 소액 수입화물에 대하여 일반 수입화물에 비해 간소한 절차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과세가격 20만엔 이하의 물품으로서 ‘소액화물간이통관’ 취급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도 NACCS 시스템상의 검사구분 지정에 의하여 검사를 수행하게 됨
- 수입신고자가 간이통관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수입통관절차에 의하며, 수입 무역관리령에 의해 수입 승인을 필요로 하거나, 무조건 면세 등 감면세 적용을 받은 경우는 간이통관이 적용되지 않음

80) 원화 환산은 2012년 7월 평균 매매기준환율 기준

81) 관세법 기본통달 67-4-1 ~ 67-4-3

나) Air-Waybill 등에 의한 수입(납세)신고⁸²⁾

-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시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이나 상업송장(invoice)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기입하는 것으로 이를 수입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음
- 항공화물운송장이나 상업송장에 '수입(납세) 신고서'라고 표시하여 2통을 제출하며 수입이 허가된 때에는 1통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함
 - 항공화물운송장이나 상업송장의 기재 내용이 법률상 필요한 내용⁸³⁾을 충족하지 않을 시 그 사항을 적당한 곳에 추가로 기재해야 함
 - 필요 내용은 화물의 기호, 번호, 품명, 수량·가격, 화물의 원산지 및 적출지, 화물 적재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 기호, 화물의 장치장소 등임⁸⁴⁾

3) 우편 수입

- 일본우편사업주식회사를 통해 국제우편의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
 - 우편사업주식회사에서는 국제특급우편(EMS)과 항공우편(Airmail), 보통우편물(Surface mail), 이코노미 항공(Economy Air, SAL)의 방법으로 우편 물품 수입 및 통상우편물(서신, 엽서)을 취급함
- 세관은 우편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⁸⁵⁾, 외국에서 보내온 우편물은 서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세관 검사의 대상이고, 이러한 세관 검사는 세관외부 우체국출장소(税関外郵出張所)가 설치되어 있는 우체국에서 실시됨
 - 세관외부 우체국출장소는 ① 도쿄세관 - 도쿄 외부 우체국 출장소, ② 요코하마 세관 - 가와사키 외부 우체국 출장소, ③ 나고야 세관 중부 공항 세관 지서 - 중부 외

82) 관세법 기본통달 67-4-4

83) 관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59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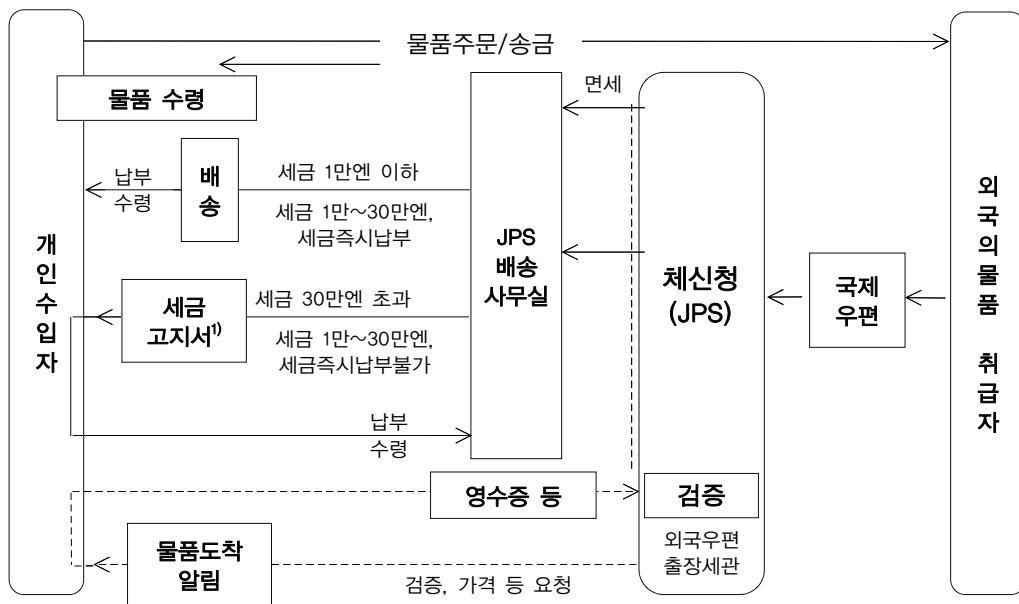
84) 관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85) 일본관세법 제76조 및 제77조

부 우체국 출장소, ④ 오사카 세관 - 오사카 외부 우체국 출장소, ⑤ 모지 세관 하카타 세관 지서 - 후쿠오카 외부 우체국 출장소, ⑥ 오키나와 지구 세관 - 나하 외부 우체국 출장소 등 6곳임

- 일본의 관세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우편물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 관세법⁸⁶⁾ 제6장 통관의 제8절(제76조 내지 제78조)에서 우편물 등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며, 관세법시행령(稅法施行令)⁸⁷⁾에서는 제7절 ‘우편물에 관한 특칙’에서 우편물 통관 관련 내용을 규정함

[그림 Ⅲ-3] 일본 개인물품 우편 수입 절차도



주: 1) Notice of assessment
 자료: 일본 관세국(www.customs.go.jp)

-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금의 합계에 따라 구분되어 통관됨

86) 2012년(평성 24년) 3월 31일 개정 제19호
 87) 2012년(평성 24년) 3월 31일 개정 정령 제111호

-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이고 무세·면세 대상 물품의 경우 우편사업 주식회사, 우체국으로부터 수취인에게 직접 물품이 배송됨
-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이고 무세·면세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합계액이 ① 1만엔 이하, ② 1만엔 초과 30만엔 이하, ③ 3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되어 통관됨
- 과세가격이 20만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이 도착하면 우편사업주식회사로부터 수취인에게 통관절차 안내문서가 발송되며, 물품은 직접 배송되지 않음

〈표 Ⅲ-7〉 우편 물품의 배송 및 납세 유형

기준 과세가격	세금합계액	세금 납부	우편 물품 배송 및 납세 유형
과세가격 20만엔 이하	0엔(무세·면세)	×	우편사업주식회사에서 수취인에게 직접 물품 배송
	1만엔 이하	×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와 함께 수취인에게 물품 직접 배송
	1만엔 초과 30만엔 이하	○	우편주식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물품 도착을 수취인에게 통지 후, ① 수취인에게 물품 직접 배송 ② 화주가 지정우체국 등에서 물품을 찾음
	30만엔 초과	○	수취인에 직접 배송 불가, 지정우체국 창구에서 인도받아야 함
과세가격 20만엔 초과	-	○	우편사업주식회사에서 수취인에게 통관절차 안내문서 발송 → 일반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 진행

가) 과세가격 20만엔 이하 물품

- 수취인에게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 안내'라는 엽서가 도착했을 경우에는 기재된 요구 서류와 엽서를 세관외부 우체국출장소로 우송 또는 지참하거나 전화 연락하여야 함
- 세관에서는 서류와 상품을 비교하여 가격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금 수납과 인도를 진행함

□ 과세 물품을 수령 시에는 통관 비용(일본우편주식회사 수수료)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① 무세·면세 대상 물품

□ 무세 또는 면세 대상 물품,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사업 주식회사(배달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물품을 직접 배달함

② 과세가격 20만엔 이하, 세금이 1만엔 이하 물품

□ 관세 과세대상물품 중 세금이 1만엔 이하인 경우, 물품은 외국의 우편출장세관(sub-branch customs)에서 발행한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for International Mail, 이하 과세통지서)’가 수취인에게 직접 배송됨

○ 과세통지서에는 과세 대상 우편물 품명 외에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수량 및 가격과 적용되는 세율, 징수 세액이 기재되어 있음

○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물품 대금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CIF 가격이 됨

□ 수취인은 물품을 수령할 때에 관세 및 취급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③ 과세가격 20만엔 이하, 세금이 1만엔 초과 30만엔 이하 물품

□ 납부해야 할 세금이 1만엔 초과, 3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배송사무실(delivery office)이나 우체국에서 소포의 도착 사실과 관세액을 수취인에게 전화로 통지함

□ 이 경우 ① 수취인에게 물품이 직접 배송되거나 ② 화주가 지정 우체국 등에 직접 가서 물품을 찾는 방법이 있음

□ 직접 배달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우편사업주식회사를 통해 과세통지서와 납부서가

우편물과 같이 배송되며, 이 때 세금 및 수수료를 지불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 물품 수령 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사업 주식회사에서 송부한 과세통지서가 수취인에게 발송되며, 이 통지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우체국 등에 가서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④ 과세가격 20만엔 이하, 세금의 합계액이 30만엔 초과 물품

-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만엔을 초과하는 우편 수입 물품은 수취인에게 직접 배송될 수 없으며, 따라서 수취인은 지정 우체국의 창구에서 과세통지서를 제시하고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나) 과세가격 20만엔 초과 물품

- 외국에서 과세가격이 20만엔을 넘는 우편물이 일본에 도착하면 우편사업주식회사에서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통관절차 안내문서를 발송함
- 안내문서가 송부되면 일반화물로 수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업송장(仕入書) 등 수입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사업 주식회사 및 기타 통관업자에게 수입통관 절차를 의뢰하거나, 우편물이 보관되어 있는 우편사업 주식회사 통관 지점을 관할하는 세관외부 우체국출장소에 가서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해야 함
- 관세 등의 세금은 현금 외에도 ATM 기계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지불할 수 있음
-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가격을 모르는 경우, 세관에서는 수취인에게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 안내'라는 엽서를 송부하여 송품장, 영수증, 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등의 제출을 요구함

- 통관을 위해 상품 및 샘플에는 송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20만엔 이상의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다) 간이 세율

- 10만엔 이하의 수입 우편물품은 간이세율(簡易稅率)을 적용하는 소액 수입화물의 범위에 해당됨⁸⁸⁾
 - 하지만 동일한 사람이 보낸 같은 이름의 수취인, 동시기에 분할하여 우송한 것 등 (예: 우편물 무게 제한으로 분할)은 해당 분할된 모든 수입 우편물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즉, 1개의 송장에 관련된 화물을 2개 이상의 물품으로 분할 신고한 경우에는 송품장에 관련된 모든 화물의 과세가격을 합계한 금액을 총과세가격으로 함
- 간이세율 적용을 원치 않을 경우 그 취지를 세관에 신청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0만엔을 넘는 것은 물품 전체금액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함
- 예를 들어, 와인에 대한 간이세율은 리터당 70엔, 소주 등 증류주는 리터당 20엔, 토마토소스와 빙과류에는 20%, 장난감, 유리 및 플라스틱 제품에는 3%의 세율이, 고무 또는 종이, 철강 제품에는 0%의 간이세율이 부과됨
 - 기타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5%로 적용되고 있음
- 내국소비세(소비세, 주세 등) 및 지방소비세는 간이 관세율과는 별도로 부과되며, 무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는 면제되는 대신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과세됨
- 그러나 니트제품 의류, 신발, 쌀 등의 곡물과 그 조제품에 대해서는 '소액수입화물에

88) 관세정률법 제3조의 3,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제3조의 3 제1항

대한 간이세율표'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됨

- 기타 대상 간이세율 적용 배제 품목으로는 우유, 크림 등과 조정 제품, 햄이나 쇠고기 통조림 등 육류 조제품, 담배, 정제 소금, 여행 공구, 핸드백 등 가죽제품 등이 있음

4) 특송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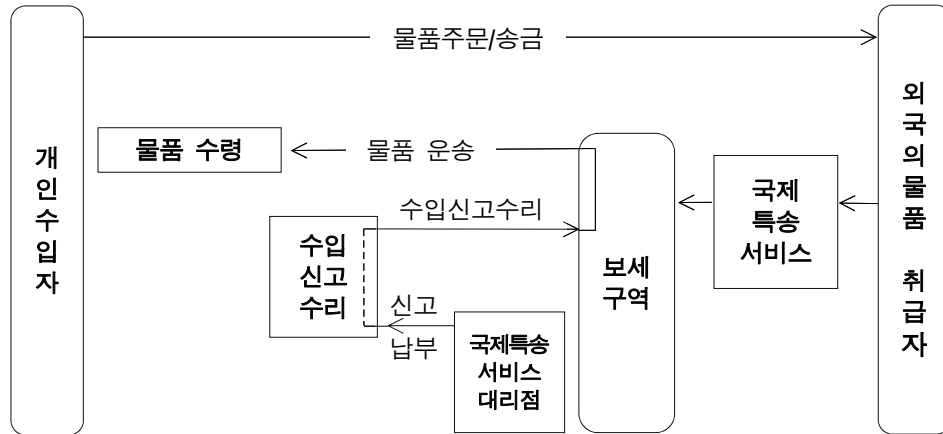
1) 일본의 특송제도

- 일본은 특송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전(door to door)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지칭함
- 일본은 특송물품의 운송업을 '국제택배편'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이동화물의 형태에 따라 쿠리에(Courier)와 스몰 패키지 배송화물(Small Package Delivery)의 두 종류로 나누어짐⁸⁹⁾
- 쿠리에는 선하증권, 은행 간의 결제서류, 계약서, 설계도, 입찰서류 등의 상업서류와 통관수속이 간단한 서적류 등으로 잡화, 통관, 국제수송, 배송을 일체화함
 - 알기 쉬운 운영체계, 정시 및 지정날짜 내의 배송과 같은 서비스 특징을 가짐
- 스몰 패키지 배송화물은 쿠리에보다 중량이 나가는 소형화물 서비스로 북미향 상품인 경우 USD 250 미만, 타지역인 경우 20만엔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화물의 포장형식(높이+세로+가로)이 160cm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특징을 가짐⁹⁰⁾
- 일본에서는 택배화물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외국물품은 모두 보세지역에 반입한 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89) 송선욱,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90) 송선욱, 2004.

[그림 Ⅲ-4] 일본 개인물품 특송 수입 절차도



자료: 일본 관세국(www.customs.go.jp)

- 국제특송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통관업자(customs broker)가 관세 등 세금을 선납하여 통관하고 일본 내 수취인에게 배송됨
- 특송물품의 화주는 수입자 즉 수취인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수입 물품과 관련하여 가산세 등의 문제 발생 시 수취인이 책임을 부담함
- 특송물품도 일반 수입과 마찬가지로 NACCS의 구분에 따라 3가지(구분 1: 서류심사 생략 즉시허가, 구분 2: 서류심사, 구분 3: 화물검사)에 의하며, 구분 3이 된 물품은 X-Ray검사를 시행함
 - 통관업자가 물품을 X-Ray 기계가 있는 장소에 반입, 세관이 검사함
- 특송회사(FEDEX, DHL, UPS, TNT 등)는 사전에 개인 수취화물 등에 대해 수입신고 전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에 점검을 함으로써 세관 검사를 줄이려는 목적이기는 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세관 검사가 이루어짐⁹¹⁾

91) 광병근, 『국제항공특송업의 경쟁전략과 통관안전성에 관한 실증 연구』, 2010년 8월

〈표 Ⅲ-8〉 국제택배편 항공화물

(단위: 1 Master 운송장¹⁾)

	2007년	2009년	2011년
수출	415	470	573
수입	1,014	1,615	702
합계	1,429	2,085	1,275

주: 1) 택배화물은 중량이 작고 발생건수가 많아 Master 운송장을 그 단위로 집계함. Master 운송장은 수 개의 House 운송장으로 구성되므로 위 건수는 업체와 화주 간 개별 건수로 보아서는 안 됨(즉, 항공회사가 혼재업자에게 발행하는 운송장의 수입)

자료: 일본 국토 교통성 항공국

- 일본에서는 특송화물과 일반화물과의 구분이 없이 통관업자에 의한 세관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음
 - 통관 업자(Customs Broker)의 허가요건은 자본금, 자격요건, 시설기준 등 경영의 기초가 확실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을 하고 있으며, 장치물품 또한 세관 또는 특송업자가 설치한 창고 등 세관이 허가한 보세지역에 화물을 반입해야 함

- 특송화물로서 과세가격 20만엔 이하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소액화물 간이통관’ 취급을 받아 간소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음⁹²⁾

92) 관세법 기본통달 67-4-1 ~ 67-4-3

4. 캐나다

가. 개관

1) 개요

- 캐나다의 CBSA(Canada Border Service Agency)에서 수출입 화물통관 및 밀수단속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캐나다 체신청(Canada Post)에서 우편 수입물품을 취급하고 있음

- 캐나다의 HS 품목분류는 최종부인 21부(SECTION XX)를 97류부터 99류로 구성하고 있으며, HS 품목분류코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단위의 세번을 사용하고 있음
 - 21부의 97류는 예술품과 골동품 등이 분류되는 류(Chapter)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1부 97류가 최종 류임
 - 캐나다가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는 98류와 99류는 특별 품목 분류 규정으로 98류에는 선물을 비롯한 비상업적(non-commercial) 물품이, 99류는 조건부 수입물품 및 최종용도(end use)의 상업적 물품 등이 분류됨

- 캐나다의 CBSA는 관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용하는 법률(legislation), 규제(regulations), 정책(policies), 절차(procedure) 등을 포괄하는 규정인 D Memoranda를 두고 있으며, 현재 D0(D Memoranda의 리스트)부터 D22까지 존재함⁹³⁾

- 캐나다 CBSA는 특송물품 및 국제 우편물품에 대한 검사를 통해 마약, 총기류 등의 수입금지물품의 밀수 시도를 적발하였으며 이러한 검사는 계속되고 있음
 - 최근 CBSA는 침대 커버로 신고된 특송 수입물품을 검사한 결과 마리화나 13kg과 대마초 1kg을 적발하였음
 - 또한 신문으로 수입 신고된 자메이카에서 수입된 소포를 검사하여 3.2kg의 대마

93) <http://cbsa-asfc.gc.ca/publications/dm-md/menu-eng.html>

초를 적발한 사례가 있음

- 벤쿠버 국제우편센터에서는 CBSA가 검사를 통해 전기충격기(Stun Gun)의 밀수를 적발, 동일한 주소로 우편수입되던 물품도 모두 검사하여 총 32개의 충격기를 적발한 바 있음

2) 일반 통관 절차

-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상업용 제품은 캐나다 관세청(CBSA: 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을 거쳐 수입됨
- 수입 시 CBSA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CCD(Cargo Control Documen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CCD(Canada Customs Coding Form) 각 2부와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1부임
-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 도모를 위하여 주기적 수입 물품, 안전성 및 국민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제품, 과거 수입규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수출입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물품검사를 면제함
- 캐나다는 인터넷 기반의 전산화시스템 및 GPS 기술을 활용한 집배송 체제가 정착되어 있으며, 캐나다의 주요 무역항구로는 몬트리올, 할리팩스, 벤쿠버항이 있으며, 토론토와 몬트리올, 벤쿠버에 주요 국제 공항이 위치하고 있음
- 캐나다의 서류상 통관 절차는 크게 '최소서류통관제도(RMD)'와 '일반서류통관제도(RFD)'로 구분되고 있음
- 최소서류통관제도(RMD, 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는 최소의 서류로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관세 납부 이전에 물품을 통관하는 제도임
 - 통관 관련 위반사항이 없으며, 향후 문제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업체로 전년도 월

평균 관세납부액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함

– 보증금의 최소금액은 250 CAD이고 최대 금액은 1,000만 CAD임

- 필요서류는 총 3종으로 화물관리서류(Cargo Control Document) 1부, 상업송장 2부,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필요 시) 1부임

□ 일반서류통관제도(RFD, Release on Full Document)는 일반적인 통관절차로서 관세 납부와 통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도로 최소서류통관제도와는 달리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음

- 필요 서류는 화물관리서류 2부, 상업송장 2부, Canada Customs Coding Form 2부, 수입허가서 또는 Health Certificate 1부, 필요 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1부임

□ 캐나다는 2002년 AMPS(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통관서류 작성오류에 대한 벌금형 제도로, 서류 작성 시 HS코드, 원산지, 제품 설명 등의 사항을 기입할 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AMPS 위반 시 패널티는 3-Strike 제도를 도입해 첫 위반 시 단순경고로 문제가 마무리되지만, 위반사례가 AMPS 시스템의 기록에 남아 향후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됨
- 세법, 관세율표,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 등의 모든 수입관련 규제에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단순 경고 또는 벌금형, 제품 압수, 고발조치까지 다양한 처벌이 적용됨

□ CBSA가 관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용하는 법률, 규제, 정책, 절차 등을 포괄하는 규정인 D Memoranda에 통관과 관련된 각종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

- D Memorandum 중 D5 내에는 국제 우편(International Mail) 관련 규정을, D8 내에는 감면과 임시 수입(Remissions and Temporary Importation)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평가(D13) 또는 관세환급(D7) 등 세부적인 업무 규정을 두고 있음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1) 면세기준

- 캐나다로 수입되는 20 CAD 이하의 소액물품은 관세 및 제세금이 면제됨
- 수입물품의 가격이 20 CAD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세와 연방소비세(GST, Goods and Services Tax)⁹⁴⁾, 통합판매세(HST, Hamonized Sales Tax)⁹⁵⁾, 지방소비세(PST, Provincial Sales Tax)⁹⁶⁾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그러나 이 금액기준과는 상관없이 담배, 책, 정기간행물, 잡지, 주류, HS 9816.00.00 호에 해당하는 선물(gift) 등은 이 감면 규정에서 제외됨
 - 즉, 선물은 소액 면세 기준과는 따로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음
- 20 CAD를 초과하는 물품을 나누어 신고, 즉 분할신고하는 경우에는 소액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20 CAD 이하인 비상업용, 상업용 물품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임

가) 우편수입 물품의 면세(PIRO)

- CBSA(Canada Border Service Agency)의 규정인 Memorandum D8-2-2에서 우편 수입 감면(postal imports remission)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본 면세 규정을 PIRO(Postal Imports Remission Order)로 약칭하며, 우편으로 수입되는 상업적 및 비상업적 물품 모두에 적용됨
- PIRO에 의해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우편물의 가격이 20 CAD 이하여야 함

94) 상품 및 서비스 거래 시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현재 5%의 GST를 부과하고 있음

95) GST와 PST를 연방정부에서 통합하여 징수하는 통합세

96)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다양한 세율이 존재함

- 우편물 소액 면세 적용이 제외되는 품목은 주류, 담배, HS 9816.00.00에 분류되는 선물, 등록해야 하는 공급자가 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수입하는 정기간행물 등임
 - 또한 캐나다의 소매상으로부터의 수입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이 외국에서 캐나다 내 소비자로 직접 배송되는 경우도 제외됨

- 우편을 통해 수입된 선물(HS 9816)의 면세 한도 금액은 60 CAD이며, 이 금액은 PIRO의 면세 기준 금액인 20 CAD와는 별개임

- 캐나다는 만국우편연합(UPU, Universal Postal Union⁹⁷⁾) 가입국이며, 우편물의 세관 신고를 위해 CN22 및 CN23 양식을 사용함

나) 특송수입 물품의 면세(CIRO)

- CBSA(Canada Border Service Agency)가 규정하는 Memorandum D8-2-16에서 특송 수입 감면(courier imports remission)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본 면세 규정을 CIRO(Courier Imports Remission Order)로 약칭하며, 본 규정에서 상업적, 비상업적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규정함

- 특송운송인(courier)은 운송수단 형태를 불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국제운송하는 자이며, 복합운송주선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⁹⁸⁾

- 특송운송인에 의해 1건으로 수입된 물품의 가격이 20 CAD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와 소비세, GST, PST 및 HST가 면제됨
 - 하나의 주문 건을 각 20 CAD 이하가 되도록 여러 건으로 나누어 운송하는 것은 각각을 1건으로 인정해주지 않음⁹⁹⁾

97) 우편물의 상호교환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국민 간의 통신 연락을 증진시키고 우편업무의 조직화 및 완성을 보장하고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국제기구임

98) D8-2-16, paragraph 4

99) D8-2-16, paragraph 7

- CIRO 규정은 관세율표 HS 9816.00.00에 분류되는 60 CAD 이하인 선물용품의 면세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며, 주류와 담배류는 물품의 가격에 상관없이 특송수입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에 등록해야 하는 해외 공급자가 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수입한 서적, 신문, 잡지 등은 규정 적용이 제외됨
 - 상업적인 거래 중 캐나다 소비자가 캐나다 중개인을 통해 해외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도 본 규정 적용이 제외됨

- 외국 판매자의 에이전트를 통해 캐나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관세 및 내국세 부과 대상이 됨
 - 예를 들어, 외국의 판매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임

〈표 Ⅲ-9〉 캐나다의 소액물품 면세기준

	구분	조건
소액면세 (우편, 특송 포함)	면세기준금액	20 CAD
	면세 제외대상	담배, 주류, 책, 잡지, HS 9816호 선물(gift), 외국 판매자의 대리인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선물용 물품	HS 9816.00.00호의 선물(gift)의 면세기준금액	60 CAD
	선물 면세 제외대상	담배 제품 또는 주류, 광고물

2) 제9816호 선물(gift) 면세 규정

- 캐나다에서는 비거주자로부터 발송된 선물(casual donations)에 대해 HS 9816.00.00 세번을 적용함
 - 반면, 거주자가 해외여행 등을 통해 반입하는 선물용 제품은 HS 9804에 분류되어 개인 물품 면세(personal exemption) 규정에 의해 관세와 제세금이 면제됨

- 60 CAD를 넘지 않는 선물(gift)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함
 - 담배제품 또는 주류, 광고 우편물(advertising matter) 등은 선물 면세 적용 제외 대상임

- HS 9816호의 선물에는 광고 용품(advertising matter), 주류, 담배류는 제외됨

- 만일 이 세번에 분류되는 선물이 60 CAD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세와 세금이 적용됨
 - 공동의 수취인이 다수라는 이유로 면세되는 선물의 금액이 60 CAD를 초과할 수 없음(예: 3인 가족을 위한 선물로 180 CAD 가격의 물품은 과세 대상)
 - 60 CAD를 넘지 않는다면, 면세 수입 가능한 선물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연합(association), 기관(organization), 회사(company), 사업체(business) 등은 9816호에서 정의하는 수취인이 될 수 없음

- 9816호로 분류되어 면세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선물용임이 명확히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선물은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인사 카드(greeting card)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선물은 온라인스토어 등의 제3자인 비거주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내질 수도 있으며, 요청된 물품이 아닌 진정한 선물임을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HS 9816호에 분류함

- 제9816호에 분류되는 선물은 우편 수입 감면이나 특송 수입 감면과 함께 적용되지 않으며, 각각의 면세 기준 금액은 독립적으로 적용됨

- 만일 선물이 60 CAD를 넘는다면, 수취인은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세(regular duties)를 납부하여야 함

다. 통관제도

1) 개요

- CBSA(Canada Border Service Agency)는 Memorandum에서 우편 수입과 특송 수입 물품의 통관과 감면(remission)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우편물 감면 규정을 PIRO(Postal Imports Remission Order)로, 특송물품 감면 규정을 CIRO(Courier Imports Remission Order)로 약칭함
- 캐나다로 수입되는 우편, 특송 물품 중 20 CAD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 그러나 우편 또는 특송의 방법으로 수입되었다고 할지라도 60 CAD 이하인 경우 관세 등이 면제되는 선물(HS 9816.00)과 구분하여야 함

2) 통관절차 간소화 제도

- 캐나다는 특송 및 우편화물에 대해 간소한 통관절차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가) 우편물품 선반출 제도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납부 전 물품 선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취인의 편의를 증진함(단, 1,600 CAD 이상의 상업용 물품 제외)

나) 특송 LVS 프로그램

- 가격이 1,600 CAD(한화 약 1,803,200원) 이하인 특송 물품의 통관 시 특송 LVS(Low Value Shipment) 프로그램을 통해 통관상 편의를 제공하여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관세 납부 전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음

- 특송 LVS 프로그램은, 사전에 특송화물 운송인이 CBSA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화물/반출 리스트(cargo/release list)'를 제시하여, 검사 대상화물로 선별되지 않은 것은 반출되도록 한 제도임

3) 우편 수입

- 캐나다 체신청(Canada Post Corporation)은 체신청법(Canada Post Corporation Act)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법령에서는 캐나다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은 캐나다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규율됨을 규정하고 있음¹⁰⁰⁾
- CBSA의 국제우편 처리시스템규정¹⁰¹⁾에서 세관공무원의 권한과 우편물 면세의 기준 금액, 우편물의 검사, 관세 및 내국세의 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편수입 감면 규정(Postal Imports Remission Order)¹⁰²⁾에서는 관세와 내국세 면제에 대해 규정함
- 캐나다 체신청은 우편 수입 물품 배송 업무와, CBSA를 대신하여 관세·내국세를 수납하는 업무에 책임이 있음
- 위험 및 금지물품(예: 불활성 또는 탄약의 복제품, 연료를 넣은ライター 등)은 우편으로도 수입이 금지됨
- 우편 수입 물품은 담보의 제공 없이, 관세 납부 전 물품을 선반출할 수 있음
 - 단, 수입물품이 금지 또는 관리 품목이거나 1,600 CAD 이상의 상업용 물품인 경우에는 선반출이 불가함

100) Canada Post Corporation Act 42

101) Memorandum D5-1-1,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International Mail Processing System

102) Memorandum D8-2-2

가) 우편물품의 검사

- 캐나다 체신청은 CBSA에 국제우편물을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CBSA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물품을 분리해내고 식별해내기 위해 모든 등급¹⁰³⁾의 우편물을 검토함
 - 수입 금지 및 제한물품과, 관세 및 내국세 부과대상 물품, 또는 정부 기관 또는 부서 등의 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분리되어 추가 검토를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됨

- 기본검사에서 CBSA는 20 CAD 이하의 면세 대상 수입물품 및 60 CAD 이하의 HS 제 9816호 선물로 수입된 물품을 걸러내고, 더 이상 CBSA의 관리가 필요치 않음을 확인한 후 물품을 캐나다 체신청으로 보내어 배송하도록 함
 - 이들 물품에는 'Cleared Customs'라는 도장이 찍히게 됨

- CBSA는 수취인이나 발송인의 허락 없이도 캐나다로 반입된 모든 우편물을 개장 및 검사할 수 있음
 - 단, 포장재를 포함하여 30g 미만의 중량을 가진 물품은 검사하지 아니함
 - CBSA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제우편물 검사는 원산지, 수량, 가격의 확인뿐만 아니라, 관세법, 관세율법, 소비세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를 다른 정부 부처 (government department)를 대신하여 검사하는 것임

- 통관 우편센터(CBSA Mail Center, CMC)는 국제 우편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기본적인 확인 작업, 2차 과정(Secondary Processing) 및 관세 및 내국세 산정의 업무를 이행함
 - 현재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체신청 시설 내 위치하여, 캐나다로 수입되는 우편물의 집중화와 통관, 배송의 신속화를 도모함
 - 우편수입 관리시스템(PICS, Postal Import Control System)은 CMC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우편 물품의 처리 및 CBSA 검사로 보낼 물품들을 관리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103) priority post, first class, registered, parcel mail

- 우편 수입 물품은 관세의 납부 전 물품 반출이 가능하나, 1,600 CAD 이상의 상업용 물품, 수입 금지, 규제 물품인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함
 - 1,600 CAD 이상의 상업 수입물품이 우편으로 도착하면 그 즉시 CBSA는 수취인에게 통보하며 수취인은 적정 서류를 CBSA에 제출해야 함

나) 우편물품 과세 및 배송

-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① 물품의 가격(CAD 기준), ② 해당 물품이 선물인지의 여부, ③ 관련 법령에서 면세로 지정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우편 수입 물품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관세 및 제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본 수수료도 면제됨¹⁰⁴⁾
-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GST, HST, PST 등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Form E14, CBSA Postal Import Form'이 물품 배송 시에 첨부됨
- 관세와 제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는 핸들링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나, 관세와 제세금의 부과 대상인 우편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핸들링 비용을 캐나다 체신청이 수취인에게 부과함
 - 이러한 핸들링 비용은 물품을 인수받는 때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수표, 신용카드 또는 수취인 본인의 캐나다 체신청 계좌로 지불할 수 있음
- CBSA 우편물 수입 양식인 'Form E14, CBSA Postal Import Form'은 관세 및 내국세를 산정하고 도착한 우편물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류임
 - 본 양식의 후면에는 'Form B2G, Informal Adjustment Request'가 있는데, 이는 우편물품 또는 캐나다 체신청의 특송물품, 여행자 수입신고 물품으로서 비상업적인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액에 대해 조정 신청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양식임

104) Fees in respect of Mail Regulations(2012.06.10)

- 주인이 없는(unclaimed) 물품 및 관세와 수입 세금이 미납된 품목은 30일 후 발송인에게 반송되며, 반송 수수료를 부과함
 - 발송인에 의해 'Abandon'이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반송하지 아니하고 체신청이 이를 처분함

다) 세금 조정 제도

- 부과된 관세액과 세금에 수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 세금 수취를 거절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세액 재산정을 요청하거나, ② 먼저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고 수정(adjustment)을 요청할 수 있음
- 세금 납부 전, 부과된 관세 등 재산정 요청 시에는, 소포의 수취를 거절하고, 캐나다 체신청으로 하여금 물품을 CBSA에 되돌려보내도록 요청함
 - 체신청은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Form E14, CBSA Postal Import Form상에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사본을 교부하고, 물품을 CBSA로 되돌려보냄
 - CBSA가 체신청으로부터 물품을 되돌려받으면, 세액 산정에 관한 상의를 위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함
 - 만일 세액 재산정 후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CBSA는 체신청에 물품을 보내어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재산정 후에도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CBSA는 해당 물품에 새로운 E14를 부착하며, 물품의 배송 시 수취인이 세금을 납부하면 됨
- 관세 등의 세금 납부 후, 관세와 제세금의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Form B2G, CBSA Informal Adjustment Request를 작성함
 - 작성된 서식과 보충 서류들(상업송장 등 물품 또는 기타 물품의 정확한 가격을 보여주는 서류)을 가장 가까운 Casual Refund Centre(CRC)로 송부함
 - CBSA는 수취인의 클레임 사항을 검토하여 환급금이 발생 시 환급을 진행함
 - 만일 물품이 수입 시점에서 관세 면제 및 기타 세금 면제 대상이었던 경우, 체신

청으로부터 부과되었던 수수료도 환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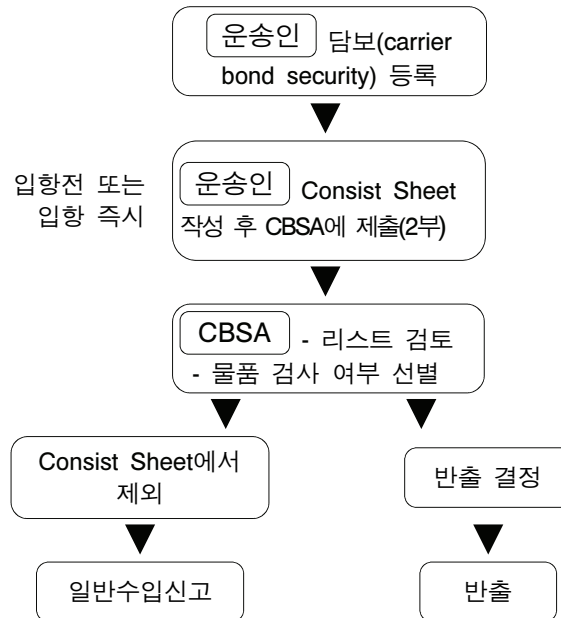
4) 특송수입

- 특송운송인에 의해 1건으로 수입된 물품의 가격이 20 CAD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와 소비세, GST, PST 및 HST가 CIRO 규정에 의해 면제되나, 20 CAD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적용함

가) Consist Sheet 신고 반출 절차(CIRO 통관 절차)

- 20 CAD 이하의 물품 수입 시, CIRO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Consist 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임
 - 특정 물품 및 특정 형태의 상업 거래는 Consist Sheet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이러한 신고/반출절차(reporting/release process)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운송인은 CBSA에 운송인 담보(carrier bond security)를 등록해 놓아야 함
 - 담보의 금액은 운송수단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만일 CBSA가 운송인이 본 제도의 혜택을 남용하는 것을 적발하게 된다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Consist Sheet 신고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운송인은 본 Sheet의 포맷을 작성하여 사본을 CBSA의 Courier LVS Program Unit에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운송인명, 수출입자의 이름과 주소, 포장 수량, 물품 명세, 중량, 원산지 등의 정보를 타이핑의 방법으로 기입하여야 함
- 입항 즉시 또는 입항 전, 운송인은 반출 희망 물품에 대해 모든 선적물품이 기재된 Consist Sheet 사본 2부를 CBSA에 제출하여야 함

[그림 Ⅲ-5] CIRO(Courier Imports Remission Order) 수입절차



- CBSA는 선적물품 리스트를 검토하여 검사 대상 물품을 선별하며, 선택된 물품을 검사하고 반출하거나, 반출하지 않고 Consist Sheet에서 제외할지를 결정함
 - Consist Sheet로부터 제외된 선적물품은 각각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함
 - 검사 후 반출 결정된 물품에 대해 CBSA는 하나의 사본에는 반출 도장을 찍어 운송인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의 사본은 CBSA가 보관함

- CIRO가 적용된 물품은 캐나다 관세법 제32조(수입 물품의 관세 정산·납부 후 반출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 절차의 적용 없이 반출될 수 있음
 - 물품의 반출 후에는 운송인이 수입자에게 제공할 책임과 반출 정보 및 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Consist Sheet는 물품의 반출 자료이자 회계 자료이므로 운송인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며 보존 기간은 6년임

나) Courier LSV(Low Value Shipment) 프로그램¹⁰⁵⁾

- 캐나다의 LVS 프로그램은 특송운송인(courier)에 의해 수입되는 1,600 CAD 이하 물품에 대해 신고, 반출 등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소화된 신고절차뿐만 아니라 관세 납부 전 물품을 선 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이 프로그램에서 특송운송인(courier)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자로서, 우편을 통한 수입을 제외함’으로 규정되어 있음

- LV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송 운송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CBSA 내 관련부서에 인증을 요청해야 함
 - 운송인은 보세운송인(bonded carrier)이어야 하며, 관세법 등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고할 것, 12개월 이내에 본 인증이 취소된 적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인증받을 운송인의 부도, 규정 위반 등 더 이상 인증 요건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 CBSA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받은 운송인은 1,600 CAD 미만의 수입물품(수입금지 대상 품목이 아닐 것)에 대해 화물/반출 리스트(cargo/release list)을 CBSA에 제시함으로써 물품을 반출할 자격을 가짐
 - 화물/반출목록은 반드시 타이핑되어야 하며 신고일자, 운송인명 및 코드, 운송수단의 등록번호 등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 그 외에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물품의 수량, 중량, 가격, 명세, 원산지 등이 표기되어야 함

- CBSA에 제출하는 화물/반출 리스트에는 정확한 물품 명세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로

105) Memorandum d17-4-0 Courier Low Value Shipment Program

써 CBSA가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물품 도착 전 또는 도착 즉시 운송인이 2부의 화물/반출 리스트를 CBSA에 제출하면 CBSA는 리스트를 검토하고, 검사가 필요한 물품을 가려냄
 - 이 때, 검사 대상으로 선택되지 않는 물품은 출고되는 것이며, CBSA 직원은 2개의 화물/출고리스트 중 하나에 출고 도장을 찍어 운송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하나는 CBSA에서 보관함
 -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보세창고 내 CBSA의 지정 장소에서 검사되며, 이 때 검사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penalties)이 주어짐
 - CBSA는 선택된 물품을 검사하며, 물품을 반출할지 또는 화물/반출리스트를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함

- 만일 CBSA가 화물/반출 리스트에서 해당 선적 건을 제거하게 되면, 정식 통관 절차를 통해서 물건을 반출할 수 있음
 - CBSA의 화물/반출 리스트 제거 시 Form Y50, Reject Document Control 사본이 운송인에게 발급되며, 운송인은 각각의 화물 관리 서류를 발행함
 - 본 물품은 통관 대리인 또는 수입자에 의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반출이 가능함

- 만일 운송인의 실수로 1,600 CAD 이상인 물품을 Courier LSV 프로그램으로 통관하였다면, 수입자 또는 통관 대리인은 반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일정 양식과 함께 상업송장을 CBSA에 제출해야 함

5. 영국

가. 개관

1) 개요

- 영국정부는 2005년 4월 국세청(Inland Revenue), 관세청(HM Revenue)과 소비세청(Excise)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에서 모두 관할하게 됨

- 근거법령은 EU 관세법과 다음의 법령임
 - 소액물품의 관세 면세의 범위: Chapter V of Regulation (EC) 1186/2009 제23조
 - 15파운드 이하 상업용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주류, 담배, 향수 등 제외) – The Value Added Tax (Imported Goods) Relief Order 1984:746, Schedule 2, Group 8 item 8¹⁰⁶⁾
 - 40파운드 이하의 우편수입 선물용 물품 부가세 면세 – The Value Added Tax (Non-Commercial Consignments) Relief Order 1986:939 (as amended), Article 3
 - 우편물 개장검사 – Regulation 21 of the The Postal Packets (Revenue and Customs) Regulations 2011

- 영국의 국경에서는 A급 마약¹⁰⁷⁾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우편의 방법을 악용한 마약 밀수 사례가 있었음
 - 2011년 4월에서 9월(6개월간)의 UKBA의 마약 적발 건수는 직전 1년 동안의 적발 건수보다 많았으며, 6개월 간 적발된 마약은 2,116kg의 코카인, 774kg의 헤로인이

106) 상업용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부가세 면세 한도 하향조정(18파운드 → 15파운드): Section 76 of the Finance Bill 2011, alcohol, tobacco, perfumes and toilet waters 물품에 대해,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

107) 영국 내 마약 분류로서, class A에는 가장 위험한 마약류로 헤로인, 코카인, MDMA(엑스터시) 등이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저위험 마약은 class B와 C에 분류됨

있음

- 7월에는 베이비파우더 병 속 420만파운드어치의 헤로인 우편 밀반입이 적발되기도 함

2) 일반수입신고 절차

- 영국 수입 절차를 완료하여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외국 물품)은 영국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으며, 기타 EU 시장으로 자유 이동될 수 있음
- 수입 통관 절차는 선적 전 신고 → 입항 → 하선(보세운송 또는 타소장치) → 물품 보세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신고 → 심사 → 물품검사 → 수입신고 관리 → 관세 및 제세 납부의 순서로 이루어짐
- EU 역외국으로 물품이 수입된 경우 수입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ENS(Entry Summary Declaration), 수입물품 제시(present) – 요약신고(summary declaration) – 수입신고 및 담보 제공 - 물품 반출로 이루어짐
 - 운송인이 EU 역외의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반입세관(customs office of entry)에 ENS를 제출하여야 함¹⁰⁸⁾
 - 운송인 등 관련당사자는 물품이 양하지점에 도착한 후 3시간 이내에 form C1600A 또는 재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관에 물품을 통지하여 제시하여야 함
 - Community 내로 물품을 운송한 자 등은 form C1600과 함께 상업서류 또는 필수 사항이 기록된 전산기록(computer records)을 제출하는 요약신고를 해야 함
 - 물품이 수입된 때 NCH(National Clearance Hub)에 보통 전자방식으로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
 - 물품 도착 이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품이 도착하고

108) EU 27개 회원국은 EU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화물 위험관리와 국경보안을 위해 2010년 Entry Summary Declaration(이하 'ENS'라 함)을 도입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함.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품목 수, 운송서류번호,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 등의 항목을 규정한 CCIP(Community Customs Code Implementation Provisions) 부속서 30A의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제시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함

- 영국 내 상품 수입통관은 크게 EU 역내물품의 수입과 역외물품의 수입으로 대별되나 통관양식은 동일함
 - 통관에 필요한 서류로는 일반적인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양식인 C88, 선하증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가격신고서와 수입허가서 등이 있음

- 영국에서는 화주가 직접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며, 에이전트는 대부분 세관과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에이전트를 통해 전산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서류는 전산 입력 후 별도로 제출함
 -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 절차를 운송 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업체에 위임하고 있음

-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며,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시행됨
 -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함

- EU 역외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ICS(Import Control System)를 통해 1차적으로 물품의 위험관리를 심사한 후, 대부분의 SAD신고가 전자수출입통관시스템인 CHIEF(Customs Handling of Import and Export Freight)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 CHIEF는 전자 수출입 신고, HMRC와 정보 연계,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 검토,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기록 관리 등의 기능이 있음
 - ICS는 물품의 도착 전 ENS 처리, 물품의 안전과 보안성 위험분석 결과를 EU 회원국과 공유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회원국에서 운송인 또는 수입신고인에게

MRN(Movement Reference Number)을 부여하는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임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1) 개요

- 만일 EU 역외국으로부터 영국으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보내는 경우, 비록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관세, 소비세,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새 제품인지 중고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개인용 또는 판매용으로 구매했는지 여부도 불문함

- EU 역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액이 9파운드 이하일 경우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주류와 담배류를 EU 역내에서 영국으로 반입할 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가 면세이며, 소비세는 수량과 선물의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대상임
 - ‘특별 영토(Special Territories)¹⁰⁹⁾’로부터 들어오는 경우 수입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판매자는 영국 내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기 전 영국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영국 도착 시 물품이 세관에 압류될 수 있음
 - 소비자는 물품 대금을 환불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므로, 물품 구매 시 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역외국에서 주류, 담배류를 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담배류의 상자에는 영국의

109) Aland Islands(Finland), The Canary Islands(Spain), The Channel Islands(UK), The French Overseas Departments of Guadeloupe, French Guiana, Martinique and Reunion and Mount Athos also known as Agion Poros(Greece), 2012년 4월부터 Channel Island 추가(우편 물품일 시)

건강 경고문과 정부수입표지(fiscal marks)를 부착해야 하며, 주류의 병이 35cl보다 클 경우 영국 납세인지(UK duty stamp)를 부착해야 함

- 주류와 담배류 이외의 모든 물품의 세금부과는, EU 역내국에서 영국으로 반입될 경우, 영국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함
 - 관세,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세 모두 면제이며, 수입부가가치세의 경우 ‘특별 영토’에서 들어오는 15파운드 이상인 물품에만 부과됨

-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인(declarant)으로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는 인 또는 회사를 말함
 - 화주가 대리인(agent)에게 수입신고를 대행시킨 경우 대리인 또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대리유형에 따라 채무유형이 다름
 - 본인(a principal i.e. the declarant)을 대신하여 직접대리인으로서 수입신고한 경우 본인(the principal)이 관세채무를 부담함
 - 본인을 대신하여 간접대리인으로서 수입신고한 경우 대리인과 본인이 관세채무를 부담함(연대채무)

- 소액면세는 단일 고객에게 수입되는 소액물품과 같은 상업용 물품에는 적용되지만, 견품에는 적용할 수 없음

2) 면세 기준

- 영국은 현재 135파운드(한화 약 240,733원) 이하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EU의 Regulation (EC) 1186/2009 23조에서는 150유로(한화 약 211,044원) 이하 화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¹¹⁰⁾

- 소액물품(low value goods)은 EU가 아닌 제3국으로부터 직접 EU 국가의 수하인에게

110) 원화 환산은 2012년 7월 평균 매매기준환율 기준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 또는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음

- 물품가격(intrinsic value)¹¹¹⁾이 15파운드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됨
- 물품가격이 15파운드 이상인 경우 수입부가세가 과세됨
- 관세 및 수입부가세는 135파운드 이상인 경우 과세됨

□ 선물용 물품은 주류와 담배류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관세는 물품 가격이 135파운드를 초과할 경우만 부과하며, 수입부가가치세는 선물의 가격이 40파운드 이상일 경우 부과함

□ 선물은 개인으로부터 개인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용도는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상업적인 요소를 가지지 않아 직·간접적으로 금전이 지불되지 않는 등 선물로서의 조건을 갖추어야 인정됨

- 인터넷을 통해 수취인 외 누군가 물건을 주문하고 돈을 지불하였다면 이는 선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수취인은 각종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만일 하나의 패키지에 여러 명(가족 등)을 위한 여러 개의 선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각 선물이 따로 포장되어 있고/ 각기 다른 주소가 적혀 있고/ 각자 수입신고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면 각 선물은 40파운드가 넘지 않는 한 수입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표 Ⅲ-10〉 영국 소액물품 면세기준

(단위: 파운드)

	물품가격	과세
일반	15 이하	관세/수입부가가치세 모두 면세
	15.01 ~ 135	관세 면세 - 수입부가가치세 과세
	135.01 이상	관세/수입부가가치세 모두 과세
선물용	40 미만	관세
	40 ~ 135	관세 및 부가세

주: 우편의 경우 관세는 세액이 9파운드 이하인 경우 면제

111) 우편(postage), 포장(packing) 및 보험료(insurance costs)를 제외하고 물품에 대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함

- 그러나 주류, 향수 및 연한 향수(toilet waters), 담배 및 담배제품(tobacco products) 및 수입 금지 또는 제한물품, 예를 들면 마약류, 무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소액면세에서 배제됨

〈표 Ⅲ-11〉 역외국으로부터 수입 시 납부의무 세금

종류	납부 세금	
주류와 담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Excise Duty) 납부 ○ 관세(Customs Duty) - 물품이 135파운드 초과 시 납부 ○ 수입부가가치세(import VAT) 납부 	
향수와 토일렛 워터 (toilet water: 연한 향수)	선물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 관세 면제 ○ 수입부가가치세 - 향수 50g 초과 또는 토일렛 워터 0.25ℓ 초과 시 납부
	인터넷 등을 통한 주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 면제 ○ 관세 - 물품이 135파운드 초과 시 납부 ○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기타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 면제 ○ 관세 - 물품이 135파운드 초과 시 납부 ○ 수입부가가치세 - 물품이 15파운드 초과 시 납부 	

자료: 영국 국세청(www.hmrc.gov.uk), 'Tax on goods ordered from or bought abroad'

다. 통관절차

1) 개요

-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구매자는 물품 구매 가격과 함께 관세(Customs Duty), 소비세(Excise Duty), 수입부가가치세(import VAT)를 납부해야 함
 - 이는 물품의 종류 및 물품이 어느 곳에서 왔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함
 - 상업적인 용도로 물품을 온라인 구매한 경우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구매한 것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됨

-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구매한 물품의 사전 부가세 납부가 가능함
 - 영국 관세청과 MOU를 맺은 the Channel Islands,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관세당국 및 국제우편국은 승인을 통해 수출업자로 하여금 부가세의 사전납부를 가능하도록 함
 - 이로써 UK의 우편물 수취인은 Royal Mail handling fee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 EU 역외국에서 온라인 구매하여 영국으로 배송하는 경우, 구매가격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이 9파운드 이하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 역외국의 인터넷 판매자는 물건을 팔 때 부가가치세를 받고, 이를 당해 국가의 우편당국에 납부하며, 이들은 그 금액을 HMRC에 납부하게 됨. 이러한 판매자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특별 번호를 가지게 되며 세관 신고 시 그 번호를 기재함
 - 신고 내용에는 ‘수입부가세 납부되었음’을 표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함
 - 이 제도를 적용받는 구매자는 세관으로부터 수입부가세 또는 우편취급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됨

- 모든 주류와 담배 제품들에 대하여는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되며, 영국의 건강 경고문과 정부수입표지(fiscal marks)를 부착해야 하고, 주류의 병이 35cl보다 클 경우 영국 납세인지(UK duty stamp)를 부착해야 함

가) 소액물품의 통관절차

- 소액물품이라 하더라도 Form 88에 의한 SAD를 신고하여야 하며¹¹²⁾, 개별물품을 개인 수취인에게 수입하는 경우와 정기적으로 대량의 소액물품을 여러 수하인에게 수입하는 경우 HMRC에 사전승인을 통해 대량 수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는 LVBI(Low Value Bulking Imports concession) 특별통관절차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112) Volume 3, Part 3 and Appendix E2 of the UK Integrated Tariff

운영되고 있음

- 개별물품을 개인 수하인/수취인에게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파운드 이하 또는 15파운드 이상 135파운드 이하인 경우 부분수입신고(a partly completed import entry)로 수입할 수 있음
- 정기적으로 대량의 소매물품을 여러 수하인에게 수입하는 경우 HMRC에 사전승인을 통해 대량 수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음(Low Value Bulking Imports concession; LVBI)
 - LVBI는 개별수입신고와 함께 개별 물품을 적시한 적하목록(manifest)에 의해 세관감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LVBI 특별통관대상품목은 단일 수입신고에 최대 99개의 소매물품을 한 수입신고로 수입할 수 있으며, 단일 적하목록으로 수입되는 대량 물품에도 적용 가능함¹¹³⁾

- LVBI 특별통관대상품목은 개별 품목에 대해 적하목록상의 상품설명과 일치하는 상품코드를 신고하여야 함
- 15파운드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분류(classify) 또는 수입신고서 33란에 상품코드(commodity code)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15파운드 이상 135파운드 이하의 물품은 품목분류 및 상품코드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함
- 물품가격과 상품코드가 다른 물품이 혼재된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인 물품의 상품코드를 기재함

□ LVBI 특별통관절차는 소매의 상업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이는 LVBI 승인 조건 중 하나임), 기타의 다른 통관절차간소화제도와 함께 적용될 수 없음

□ LVBI 특별통관품목에 대해 수입신고 오류, 저가신고, 수입금지, 제한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서류가 ICS에 전송되지 않는 등 법규준수 위반 사례가 발견됨¹¹⁴⁾

113) 예를 들어 156개의 물품을 적시한 한 적하목록으로 99개 물품에 대한 한 개의 수입신고 및 나머지 57개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등 적어도 2건 이상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이는 대량의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의 위험분석과 사후심사 시 정확성 확인이 불가능하고, 종이서류 양식의 적하목록을 자동으로 위험 분석할 수 없고, 대부분의 LVBI 통관장소는 재고실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2) 우편 수입

- 영국으로 우편물이 들어오는 경로는 Royal Mail 또는 Royal Mail Group Ltd.의 소속인 Parcelforce Worldwide로 구분됨

가) 우편물의 구분

- 물품가격 270파운드를 기준으로 신고서식을 달리하며, 2천파운드를 기준으로 관세등을 산정하는 주체가 달라짐

나) 통관절차

- EU 회원국 이외 국가로부터 우편으로 수입된 물품은 발송인이 작성한 세관신고서 (Customs Declaration)가 부착되어야 함
 - 세관신고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UKBA의 추가 조사 또는 압수로 인해 배송이 지연됨
-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UK로 수입 또는 UK의 타인에게 배송하는 경우 구매자 또는 수취인이 물품의 수입자로서 세관신고서의 내용 및 그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부담의 법적 책임이 있음
 - 원격으로 주문하는 경우(예를 들어 인터넷 구매, 우편 주문 등) 해외의 발송인이 정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

- 세관신고서에는 물품설명, 가격 및 선물용인지 상업용인지 여부를 기입하며 270파운

드를 기준으로 서식이 다름

- 270파운드 이하의 물품 및 선물용 물품은 CN 22 서식을, 270파운드를 초과하는 물품 및 선물용 물품은 CN 23 서식을 사용하여 기재함

□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은 UK Border Agency(UKBA)가, EU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은 HMRC의 세관공무원(Customs officers)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의 반입 여부(illegal drugs, indecent or obscene material, offensive weapons etc)를 확인함

-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의 물품설명 및 가격이 적절히 기재되었는지, 관세, 특별세 또는 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세관신고서를 확인하는 물품검사를 수행함
- 발송인이 신고서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내용물을 확인하여야 함
 - UKBA의 지시에 따라 Royal Mail staff가 동행하여 개장검사 및 재포장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검사 비용은 a handling fee의 형태로 부과됨

□ EU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은 물품가격 2천파운드를 기준으로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으로 구분됨

- 물품가격이 2천파운드 이하인 물품은 세관에서 CN22 또는 CN23에 근거하여 부과될 관세 등을 산정(work out)하며, 그 이상의 물품은 수취인이 작성하여 체신관서(the postal depot)에 송부하여 신고한 일반수입신고서 form C88에 근거하여 산정함

〈표 Ⅲ-12〉 영국 우편 통관 요약

구분	수입신고	제출서류
물품가격이 2천파운드 이하인 물품	세관의 납세고지	1) CN22: 270파운드 이하의 물품 및 선물용 물품 2) CN23: 270파운드 초과인 물품 및 선물용 물품
물품가격이 2천파운드 초과인 물품	일반수입신고	form C88

-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Royal Mail/Parcelforce로 이송됨
-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되면 Royal Mail/Parcelforce가 서면으로 물품의 도착사실과 납부할 관세 등의 세액 및 납부방법을 통지함

3) 특송수입

- 유럽의 국제특송시장 규모는 금액기준으로 전 세계 국제특송시장 규모의 약 50%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특송업체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자산의 최적 활용 측면에서 허브(main-hub, sub-hub)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¹¹⁵⁾
 - 특송산업은 허브와 고정노선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전체 비용의 약 70%임
 - DHL은 라이프치히(독일)에, UPS는 쾰른(독일), FEDEX는 파리(프랑스), TNT는 리에주(벨기에)에 항공허브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 특송수입은 문전(door to door)으로 물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보통 전세 비행기 또는 소유 비행기를 이용함
- 특송수입물품의 면세 기준도 소액면세 기준과 동일한 15파운드이며, 15파운드 이하의 경우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면제됨
 - 선물용인 경우 1인당 40파운드까지의 금액만 가능하며 UKBA는 물품 가격의 확인과 더불어 물품을 검사함
- 특송을 이용한 물품 수입 시에도 소액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소액물품 간이통관제도인 LVBI(Low Value Bulking Imports) 특별통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적하목록(manifest)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수입신고서(SAD)를 작성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한 제도로 사전 승인을 요함

115) 김건영, 「유럽의 특송시장 운영 현황과 시사점」, 『월간 교통』, 한국교통연구원, 2009. 5, p. 75

- EU 역외국으로부터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관세는 물품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면서 특송업체가 직접 수납하고 있음

- 영국으로 수입되는 특송물품은 일반 화물과 동일하게 CHIEF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통관되며, EU로 수입 또는 통과되는 화물에 적용되는 수입관리 시스템(ICS, Import Control System), 즉 전자 보안신고 관리시스템과 규정도 특송물품에 적용됨
 - ICS는 자국 내 수입 및 통과화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사전 검사의 목적을 가짐

- CSP(Community System Provider)는 특송화물을 통관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히드로 공항 및 개트워 특송화물시설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의 명칭은 CNS(Community Network Services)임
 - 특송업체는 인증을 받아 물류 관리와 특송화물 취급에 CSP를 사용할 수 있음
 - 인증 사용자는 특송화물 처리 시설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HM Customs의 수출입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함
 - 히드로 공항과 개트워 특송화물시설의 CSP 시스템은 CHIEF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HM Customs로부터의 인증을 받고, 특송회사에 의해 고용된 입력 대리인(Entry agent)만이 CSP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 입력이 가능함

- 특송물품은 통관을 위해 D(Document, 서류), L(Low Value, 저가), H(High Value, 고가), T(Transfer, 환적) 중 하나로 분류됨
 - 다만, EU 회원국으로부터 들어온 물품은 C(free Circulation)로 분류되어 HM Customs의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으며, 즉시 반출되는 것으로 결정됨

- 특송업체는 보안 강화와 HM Customs를 위해 모든 물품에 대해 개장하고 검사할 권리를 가짐
 - HM Customs는 의심화물 발견 시 통지를 받으며, 의심화물은 격리하고 HM Customs가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감시하에 둠

- 특송화물은 HM Customs & Excise 규정 및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르는 위험 물품 운송, 테러방지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함
- IATA 규정상 위험물품으로 분류된 것은 특송운송할 수 없음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소액면세 제도 비교

1) 소액물품 면세기준

- 소액 면세의 금액기준은 주요국별로 다소 큰 편차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현재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소액면세 기준인 15만원은 일본과 미국의 적용 수준과 가장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음
 -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가 면제되는 소액 면세의 기준 금액은 대략 미국이 23만원, 호주 118만원, 일본 14만원, 캐나다 2만원, 영국 2만 6천원 선임¹¹⁶⁾
 - 영국은 24만원까지는 관세를 면제하나, 2만 6천원 이상이면 부가세는 부과함
 - 영국의 부가가치세율은 20%¹¹⁷⁾로, 관세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큼

- 우리나라는 소액물품에 대해 선물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부 주요국은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 미국은 USD 100이 넘지 않는 선물용 물품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면제함
 - 캐나다의 경우 60 CAD 이하인 선물용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면세 한도(20 CAD)와는 별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관세 및 내국세를 면제하여 줌
 - 영국은 선물용 물품 수입 시 40파운드를 기준으로 면세를 적용함

116) 2011년 7월 월평균 환율 기준

117) 기존 17.5%에서 20%로 변경하였음(2011년 1월)

2) 소액면세 배제대상

- 우리나라는 주류와 담배류도 소액기준 이내이면서 일정 수량¹¹⁸⁾(예: 주류 1리터, 켈런 200개비) 이내인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세(단, 주류에는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해 주는 반면, 주요국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주류와 담배류 수입 시 소액면세 규정에서 제외시켜, 철저히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었음
 - 조사 대상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은 주류와 담배류를 소액면세 배제대상으로 지정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는 수입 담배와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중 관세만을 면세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민건강과 관련이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류와 담배류에 관세와 부가세 면제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소액의 주류 및 담배류에 엄격히 과세하는 주요국과는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향수도 자가사용 범위 이내(60ml)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를 인정해주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알코올성 향수 제품을 소액면세에서 제외하고, 영국에서는 향수와 연한 향수(toilet water)까지 모두 소액면세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음

나. 신고특례 제도 비교

- 주요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수입,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별도의 하위규정을 두어 운영하기보다는 관세법 또는 관련규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는 신고특례제도로써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및 간이통관 제도를, 우편물의 경우 현장면세 및 간이신고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국 중 일부도 이와 유사한 간소한 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간이통관(20만엔 이하)제도와 운송서류에 추가사항 기재로 수입신고

118)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7 ‘자가사용 인정기준’

서를 대신하는 제도를, 미국에서는 간이신고(USD 2,000 이하)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캐나다도 간소한 통관절차의 일환으로 1,600 CAD 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해 화물 명세 제출만으로 관세납부 전 물품반출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 중임

다. 물품 위험관리제도

- 우리나라는 특송물품 통관에 있어, 특송업체가 일정 자본금을 가지고, 창고와 X-RAY 장비를 보유한 경우, 세관의 시설 대신 특송업체가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자사를 이용한 물품을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¹¹⁹⁾, 이처럼 특송업체에 통관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주요국의 경우, 특송수입물품이라 할지라도 검사의 권한은 관세당국이 보유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X-RAY 검색기 등 모든 검사기기는 세관에 의해 설치되었음
 - 현행 우리나라의 특송업체 자체시설 내 자체 검사 규정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특송물품 통관제도는 특송업체가 수입하는 일정 금액 이하 소액물품에 목록통관을 적용한다는 점, 소액물품을 제외한 간이신고 대상물품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함
-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특송업체는 법규준수도를 기준으로 운송업자가 일정 자본금을 보유한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특송업체를 '승인'을 통해 지정하고 있음
 - 호주, 영국의 경우 항공으로 수입되는 상업용의 대량의 소액물품에 대해 사전 승인을 통해 지정기간 동안의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119)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등

- 또한 우리나라는 특송업체와 세관과의 MOU를 통하여 업체에 자율적인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세관의 사후조치로 통관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라. 분할선적

- 세금 회피 목적 또는 중량 등의 과다 등 다양한 사유로 1건의 물품을 여러 개로 나누거나 분리하여 선적하고 따로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별개의 수입건으로 보지 않고 모두 취합하여 한 건의 수입신고로 처리함
-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도 이와 같은 분할 선적 및 신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본과 캐나다는 비록 작게 나뉘어진 각각의 물품들이 소액면세 기준에 해당할지라도 모두 합쳐진, 즉 1개의 송장에 대한 내용을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표 IV-1〉 개인 소액물품 수입 특례기준 국제비교-1¹⁾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
관할 기관명					
관세당국 (Korea Customs Service)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CBPS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재무성 관세국 (Japan Customs)	CBSA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HMRC(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UKBA(UK Border Agency)
우편/특송 관할	US Post Service, CBP	Australian Post	일본우편사업 주식회사	Canada Post Corporation	Royal Mail, Parcel Force
과세 특례 기준					
선외의 선물용 물품	USD 100 (114,336원)	-	1만엔 (144,638원)	60 CAD (67,620원)	£40 (71,328원)
소액면세 (관세 및 부가가치세)	USD 200 (228,672원) ²⁾	AUD 1,000 (1,176,500원)	1만엔 (144,638원)	20 CAD (22,540원)	£15 (26,748원) : 관세 및 부가세 면세 £15~135 (240,733원) : 관세만 면세
소액면세 배제대상	주류, 알콜성 향수, 담배/담배제품, 관세할당물품	주류, 담배	- 가족지방, 장갑·신 발, 니트의류는 선물 용이고 1만엔 이하일 때만 면세 - 담배, 주류: 관세만 면제	담배, 책, 장기간행물, 잡지, 주류	주류, 향수 및 연한 향수(toilet waters), 담배류
소액면세 근거법령	관세법 제94조제4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부가세법 제12조 제2항	관세율법 Schedule 4 32A and 32B, 관세법 규정 31AC, 부가세법 s42-5, 부가세법 Division 38	관세정률법 14조 18호	Memorandum D5-1-1, Memorandum D8-2-16	EU: (EC) 1186/2009 UK: VAT Relief Order 1984

주 1) 원화 환산 시 2012년 7월 평균 최초고시매기환율로 변환

2) 미국은 부가가치세목이 없음

〈표 IV-2〉 개인 소액물품 수입 특례기준 국제비교-2)〉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
통관 특례 제도						
근거 법령	관세법, 수입통관, 특송통관, 우편물 통관 고시	19CFR §128.0~128.25, 19 USC §1498, 19 CFR §143.21~28 19 CFR §145	호주관세법S68(1), 관세법 규정 3IAB and 3IAC	관세정률법 3조의3, 관세법기본통관 67-4	Memorandum D17-4-0	(EEC) 2913/92, (EEC) 2454/93
목록통관 유사제도 적용대상	특송 USD 100 (114,336원)	USD 200 (228,672원)	AUD 1,000 (1,176,560원) (HVLV 특별통관)	-	-	£15~135 (26,748~240,733원) (LVBI 특별통관)
간이신고 대상	우편 (간이 세율)	USD 1,000 (1,144,360원)	AUD 1,000 (1,176,560원)	간이 세율	10만엔 (1,446,380원)	1,600 CAD (1,803,200원)
	특송 (간이 신고)	USD 100 초과 2,000 이하 (114,436원 초과 2,286,720원 이하)		USD 200 초과 USD 2,000 이하 (2,286,720원)	간이 통관	

주: 1) 원화 환산 시 2012년 7월 평균 최초고시매대기준환율로 변환

2. 시사점

가.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제도의 실효성 검토

- 소액물품 운송업체의 운송 건수 등을 고려해 통관절차에 구분을 하는 국가는 있지만, 전자상거래업체를 거래유형별(개인수입, 배송/결제대행, 수입대행, 수입쇼핑몰형)로 분류하고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지정하는 등의 제도를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 외 주요 국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도의 장점으로 그들이 비교적 신뢰 가능한 성실업체라는 점, 물품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순기능을 들 수 있음
 - 특별통관대상업체는 일정 규모 및 매출액을 가지고, 관세법을 성실히 준수해 온 자로,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으며 관세당국도 어느 정도 신뢰 확보가 가능함
 - 또한,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 시 일반수입, 우편, 특송을 불문하고 수입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를 기재(수입신고서 또는 운송장, 우편 외포장 스티커 등)하도록 되어있어 화물 관리에 편의를 제공함
 - 전자상거래업체 대부분은 웹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시 관세의 과세 기준을 공시하고, 원칙적인 수입 절차를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물품과 동봉되는 송장에 판매가격을 기록, 세관의 개장검사 시에도 물품의 가격 확인을 용이하게 해줌
- 그러나 전자상거래 유형에 따른 통관방식의 차별화, 그리고 관세당국의 이러한 구분이 어떠한 실익을 가지고 있는지, 이와 같은 분류가 범죄행위 방지 및 국민 안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호주의 경우, 소액의 물품을 월간 일정 건수 이상 수입 시 대량 소액물품 통관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구체적인 업체유형의 분류와 그에 따른 상이한 통관 특례 제공 제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업체 중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수입하는 특송물품의 경우,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필요 시 X-ray 또는 수작업 판독), 우편화물인 경우 외포장에 스티커가 부착된 물품에 대해서는 개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어¹²⁰⁾ 공정성 저하 및 악용이 우려됨
 - 성실우수업체에 특혜 제공을 한다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음

- 그리고 특별통관대상업체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특송은 전산 선별건만 검사 원칙, 스티커 부착 우편물 비개장 원칙 등)과 대비하여, 당해 업체들에 대한 세관의 모니터링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된다는 점은 다소 관대한 규정으로 보여짐
 -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실제 물품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서류상의 증빙이나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범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사후에는 포착이 어려움
 - 업체의 모니터링 대상은 인터넷 도메인의 유지 및 정상운영 여부, 분기별 운영 현황 제출 여부, 세관 요청 시 거래장부 제출 여부, 관세법 준수 여부 등임

- 따라서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도 선별 방식의 개장 검사 등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떠한 통로도 밀반입 또는 탈세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대중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나. 소액물품 면세제도의 개선방안

1) 소액물품 면세기준

- 조사 대상국가 간 소액면세 기준금액은 큰 차이가 있으며 소액면세 기준은 해당 국가별 행정수수료, 부가가치세율 등 각국의 제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금액 간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움

120)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

- 현행 우리나라의 소액면세 한도의 조세형평성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는 소액한도 조정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와 산업 및 품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이행된 후에 가능할 것임

- 관세법과 별도로 하위법으로 흩어져 있는 통관 특례 규정들(특송통관 사무처리고시, 국제우편물 통관 고시,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고시)은 각 규정별로 ‘소액’의 범위와 간소한 통관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하여, 일률적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소액물품의 정의는 15만원 이하이지만, 특송화물 통관 시 15만원은 목록통관의 기준(USD 100)도, 특송 간이통관(USD 100 ~ USD 2,000) 중 어느 기준도 되지 않음
 - 미국과 캐나다, 영국은 특정 용도(선물용)를 제외하고는 각각 USD 200, 캐나다 20 CAD, £15의 소액면세기준을 우편, 특송수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호주는 AUD 1,000, 일본은 1만엔 이하를 우편, 특송 수입 여부 관계없이 적용함

-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영국은 2011년 소액면세 기준 가운데 부가가치세의 한도를 하향조정하였고, 현재 미국, 호주 등의 국가는 소액면세 기준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음
 - 미국은 면세기준의 상향조정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바 있으며, CBP의 행정비용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임
 - 호주는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비용·효익이 입증되지 않는 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기타 조사대상 국가는 아니나, 뉴질랜드는 NZ 400에서 NZ 650 또는 1,000으로 상향조정을 검토한 바 있으나,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보다 검사 및 징수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건당 NZ 22인 수입통관처리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임

- 소액면세 조정으로 인한 순이익 분석을 토대로 전자상거래물품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전자상거래업체 및 특송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민관협력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목록통관의 불법수입 감소효과 분석은 물론 예상 세수 변화, 소액물품 면세기준

조정으로 인한 관세당국의 법규준수도 관리비용을 결정하는 요소, 통관특례배제 대상 물품의 수수료 및 통관비용 및 수입자, 물류업자, 관세당국의 수익을 분석하여 순이익을 도출해야 함

2) 소액물품 면세 배제 대상의 조정

- 주요국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주류 및 담배류 제품에 대해 소액면세 배제대상으로 지정하여 소액이라도 관세를 면제해주지 않는 점은, 상대적으로 이들 품목에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정과 상반됨
 -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주류와 담배류에 대해서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면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담배 등에 부가가치세 또한 함께 면제되는 점도 문제됨
 - 부가가치세법상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¹²¹⁾
 - 일반 담배(퀵런)의 관세율은 40%, 대부분의 주류(위스키 등 양주 포함)의 관세율은 30%이며, 부가가치세율은 모두 10%임을 감안했을 때, 두 가지 세금 모두 면세해주는 규정은 담배류 고관세율 정책의 이유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현재 주류와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과 동일한데, 여행자가 여행 중 휴대 반입하는 행위와 본인의 요청 또는 타인의 선물로 해외로부터 따로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합당한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함
 - 국민 건강 목적으로 주류와 담배류의 인터넷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외국 쇼핑물을 이용한 외국산 담배의 주문은 가능하며 내국인의 요청이나 전화 주문 등에 의해 국제특송이나 우편의 방법으로 배송될 가능성이 있음

12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6호

- 우리나라는 향수를 소액면세 대상으로 인정(60ml 이하)해 주고 있으나, 향수는 현재 수량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가 과세(증가세 7%)되는 품목이고, 개별소비세는 주로 필수재화 외 사치재에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수의 소액면세 이유가 모호한 면이 있음
 - 소액면세 규정에서 향수 제품을 제외한 미국과 영국과 같이 비교적 고가물품인 향수에 대한 소액면세 배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다. 통관 특례제도의 개선방안

1) 근거법령의 정비

-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고시와 같은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만을 따로 규정한 하위법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 수입물품 통관에 대한 규정이 삼원화되어 있는 실정이고 (우편, 특송, 전자상거래) 규정 간 세부사항이 상충 또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관련된 여러 개의 고시를 각각 제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간소한 통관 기준 등이 상이하하며, 또한 정책 변경 후에도 각 고시별 금액 기준이 상충되는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
- 국제우편물 고시에서 간이신고 기준을 USD 600에서 USD 1,000으로 조정할 바 있으나(2011년 9월), 현재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고시에서는 우편물에 대한 특별통관 대상 거래 물품가격이 USD 6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이 상이함
 - 간이신고 기준금액 상향은 한-EU FTA, FTA 관세특례법 등의 원산지증명 면제기준과 일치시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표 IV-3〉 고시 주요 개정 요약

구분	제정	개정	개정 요약
특별통관 고시	2004년 12월	2009년 5월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신설 및 사후관리 강화
		2010년 3월	○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 원칙, 수입대행형 업체 요건 강화
국제우편 물 고시	2007년 6월	2011년 9월	○ 현장과세대상 우편물 한도를 USD 600에서 1,000으로 상향조정
특송물품 고시	2004년 3월	2005년 10월	○ 지정장치장 반입 원칙, 자체시설 이용요건 규정, House B/L을 발행하지 않은 물품 관리방안 규정, 특송업체의 납세보증 대상물품 확대
		2009년 5월	○ 지정장치장 물품검사 원칙,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10대 품목 목록통관 배제

주: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은 2009년 7월 폐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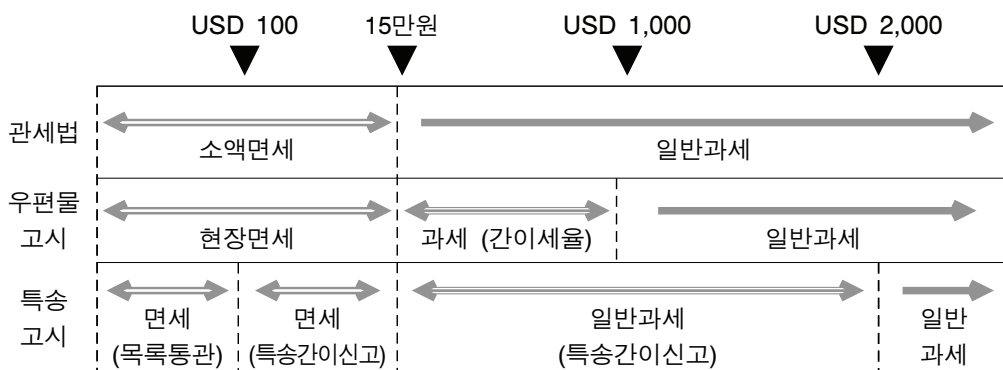
2) 우편과 특송의 간이신고 기준 일원화

- 「관세법」과 별도로 하위법으로 흩어져 있는 통관 특례 규정들의 소액범위와 간이신고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소액물품 기준은 15만원이나, 특송물품 중 면세되는 목록통관의 기준은 USD 100임
-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국가 중 미국, 호주, 영국과는 달리 소액물품의 적용기준과 목록통관 적용기준이 상이하야, 현행 제도상으로는 목록통관 대상기준은 USD 100을 초과하고 소액면세 기준인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인 물품은 일반신고에서 관세감면 물품으로 통관되고 있음
- 목록통관의 취지는 운송업자인 특송업체가 저가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배제하여 통관의 간소화를 실현하고자 함인데, USD 100 초과 15만원 이하 구간물품에 대해 법조문상 일반수입통관을 적용받고 다시 감면신청을 받는 절차를 적용한

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소액면세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2004년 개정된 바 있고, 목록통관 대상기준은 2009년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신설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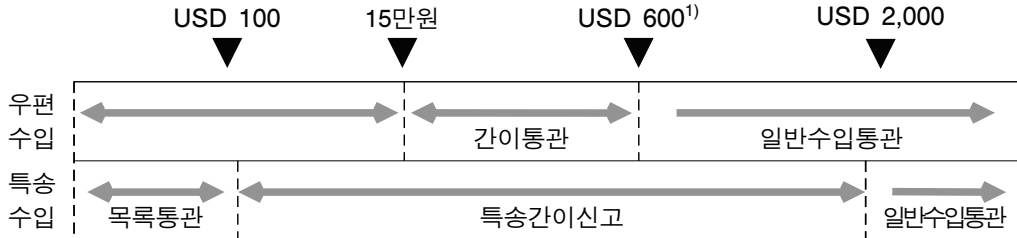
[그림 IV-1] 법령별 규정된 면세·과세 구간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우체국과 특송업체 중 어느 수단을 통해 수입되는지에 따라 소액면세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운송방법(우편 또는 택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소액면세기준을 우편, 특송, 일반수입과 상관없이 적용하고 있었음
 - 운송수단에 따른 특례 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이외에도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전자상거래 특별통관고시상, 우편 간이통관 구간은 15만원 초과 ~ USD 600¹²²⁾ 이하인 반면, 특송 이용 시 간이통관 구간은 USD 100 ~ USD 2,000이므로 기준이 일치되고 있지 않음

122) 우편물 고시에는 USD 1,000

[그림 IV-2] 전자상거래 특별통관고시에 규정된 구간별 통관 규정



주: 1) 우편물고시에는 USD 1,000으로 규정되어 있음

2) 특송업체 및 시설이용 승인제 도입

- 우리나라의 특송물품 통관제도는 특송업체가 수입하는 소액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을 적용한다는 점, 소액물품을 제외한 간이신고 대상물품에 대해 일반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와 대부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특송업체는 법규준수도(관세 등 체납 여부 등을 반영)를 기준으로 운송업자가 일정 자본금을 보유한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의 경우 특송업체를 ‘승인’을 통해 지정하며, 호주, 영국의 경우 항공으로 수입되는 상업용의 대량의 소액물품에 대해 지정을 통해 지정기간 동안의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1년 2월 특송물품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대상물품의 검사권한을 세관 공무원으로 일원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송업체와 세관과의 MOU를 통한 통관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강제적이기보다는 특송업체에 자율적인 관리권한을 부여하며, 세관이 사후조치를 하는 것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5년 특송업체가 직접 수집하여 House B/L을 발행하지 않은 특송물품에 대해 통관목록에 화물운송주선인 관리번호를 기재함

- 법규위반 또는 물품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인에 대한 자체 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특송물품이 특송업체 자체시설로 반입된 비율은 2010년에 비해 2011년 59% 증가한 반면 밀반입의 경로로 계속 지적되어 온 특송업체의 선택적인 검사권한은 2011년에 비로소 세관으로 단일화되었음

-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이용승인은 시설기준 및 세관과의 협정체결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반 승인기준은 미국과 유사하나, 우리나라는 물품의 반입 이전에 1차적인 선별을 할 수 있는 사전적하목록 제도가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사전에 위험물품을 차단하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없었음
 - 시설기준은 자본금, 창고, 검색 및 시설, X-RAY 판독인력, 취급물품 등을 요건으로 함
 - 세관과의 협정체결은 성실신고, 검색기, 인력운용, X-RAY 판독교육, 우범물품 선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함

- 우리나라는 특송통관 주요물품 가격자료들을 D/B화하여 가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 통관정보데이터(CDW), 자체적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특송 종합운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¹²³⁾ 2009년 기준으로 세관원은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에 총 45명, 국제우편물류 통관과에는 총 30명이 배치되어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이용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 중 자체시설을 갖추고 X-ray 장비와 2명 이상의 판독인원을 보유한 업체들에 세관장이 자체시설 이용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세관과 협정에 따라 성실신고, 우범제공 등의 협조를 이행하나, 자율적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임
 -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는 물품을 자체 창고에 반입하며, X-ray검사도 자체시설에서 자가 판독인원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한

123) 특송타임즈, 2009년 6월(http://parcelherald.com/bbs/zboard.php?id=03&page=29&sn1=on&divpage=1&sn=on&ss=off&sc=off&keyword=parcel&select_arrange=hit&desc=desc&no=774)

것이 아닌가 의문시됨

- 2005년 특송업체가 직접 수집하여 House B/L을 발행하지 않는 특송물품에 대해 통관목록에 화물운송주선인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법규위반 또는 물품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인에 대한 자체 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라. 특송업무 실무상 개선점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요국에서도 우편이나 특송을 이용한 마약이나 총기류 등 수입금지 물품의 적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 단속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마약 등을 은닉하여 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적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특송·국제우편은 수입금지물품의 유입 창구가 되고 있음
 - 인터넷으로 신종마약을 구입한 한 유학생은, 국제특송으로 자택까지 이를 배달 받아 클럽 등지에서 판매한 사례가 있음
 - 양념 가루 등과의 혼합으로 마약탐지견의 후각을 교란시키거나, X-ray에 포착되지 않는 은닉 방법을 악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함
- 수입금지물품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면세 대상이 소액, 소량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한 검사를 요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검사 인원의 확충이 필요함
 - 현재 특송물품 고시¹²⁴⁾에서 특송화물 X-ray 검사인원을 2명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특송 수입 건수에 비해 과소한 측면이 있음
-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의 경우 세관원이 아닌 직원이 자사 특송물품에 대해 X-ray 관독을 하는데, 이들에게 부여된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제한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4)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그리고 자체 판독 특송업체의 경우, X-ray 판독직원의 일정시간 교육이수의무 이외에도 이들의 판독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규정상 판독직원은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할 의무만이 있을 뿐, 이들의 X-ray 판독 능력을 점검하고 증명할 경로가 없어 불안성이 상존함

- 현 고시상 검사 생략 등 특혜 규정을 축소하고, 무작위방식의 검사로 위험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수입 물품, 반복 수입되는 견본품과 원부자재, 중량·크기 등으로 검색기 투입 곤란 시 검사를 생략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악용될 소지가 충분함

- 또한 신종마약의 개발 및 은닉수법의 교묘화로 인해 적발에 애로가 있으므로, 세관 및 특송회사 직원 외 마약전문가 등의 인적자원 보강이 요구됨

- 국경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외국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이와 더불어 공정한 과세 및 통관 행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곽병곤, 『국제항공특송업의 경쟁전략과 통관안전성에 관한 실증 연구』, 2010. 8.
- 관세청, 『일본통관제도해설』, 2004.
- 김건영, 「유럽의 특송시장 운영현황과 시사점」, 『월간교통』, 한국교통연구원, 제135호, 2009. 5.
- 송선욱,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3호, 2004. 12, pp. 183~201
- 정재호·마정화·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최병철,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논의」,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1권, 1호, 2001, pp. 1~28
- 최장우,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Vol. 10, No.1, 2009, pp. 229~253
- 国土交通省航空局, 「国際航空貨物動態調査報告書」(국제항공화물동태조사보고서), 2012. 3., 2010. 3., 2008. 3.
- ACBPS, Minute Paper, 2011. 6.
- Australian Customs Service, “Import Cargo Reporting Overview,” 2007.
- CBP, “Import into the United States(A Guide for Commercial Importers),” 2006. 11.
- Commonwealth of Australia, “Low Value Parcel Processing Taskforce,” Interim Report, 2012. 3.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 Number PB117, 2011. 6.
- U.S. CBP,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Overview and Status Update,” 2012. 6.

WCO, "Best Practices of Implementation of a Trade Facilitation Measure(United States)," 2010. 10.

WTO,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WTO Publications, Geneva, 199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미국 관세청, <http://www.cbp.gov/>

영국 국세청, <http://www.hmrc.gov.uk/>

일본 우편, <http://www.post.japanpost.jp/>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

캐나다관세청, <http://cbsa-asfc.gc.ca/>

호주 관세청, <http://www.customs.gov.au/>

호주 생산성 본부, <http://www.pc.gov.au/>

Canada Customs Info, <http://www.canadacustomsinfo.com/>

PRIVATEIMPORT.COM, <http://www.privateimport.com/>

[부록 1] 수입통관 고시 별표17,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제3-1-1조 관련)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 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 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 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각 5kg 5kg 1kg 10kg 5kg 각 5kg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인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 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한약재	인삼 (수삼, 백삼, 홍삼 등) 상항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 녹용은 검역 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인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 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 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 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 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 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 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 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 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 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 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 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 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 약)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 약사법 대상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膏, 秋風透骨丸, 朱 砂, 虎骨, 雞骨, 熊膽, 熊膽粉, 雞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青春寶, 強力 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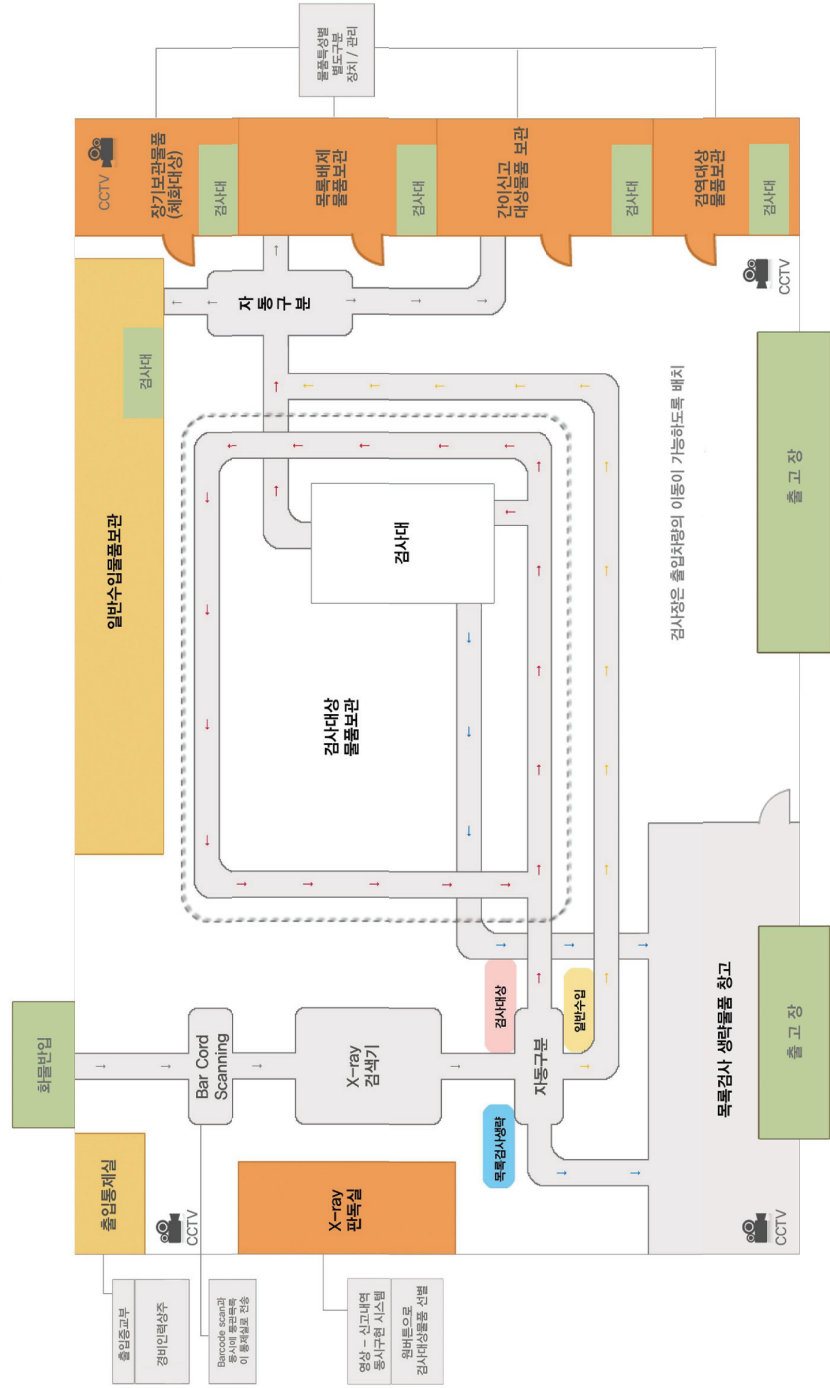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 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야생동물 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퀄런 엽퀄런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1병(1ℓ 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60ml×1병	○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부록 2] 특송물품 고시 별표1 및 별표2,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배제대상

목록통관 배제대상	간이신고 배제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 과자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비특별통관대상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록통관 배제대상 2.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3.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진이 필요한 물품 4.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5.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6.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통관보류된 물품은 제외) 7.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8.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9.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0.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부록 4] 특송물품 고시 별표5, 특송창고 표준 Lay-out

특송창고 표준 Lay-out



[부록 5] 미국 CBP Form 3461, 일반수입신고서식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4
Exp. 03-31-2015

ENTRY/IMMEDIATE DELIVERY
19 CFR 142.3, 142.16, 142.22, 142.24

1. ARRIVAL DATE		2. ELECTED ENTRY DATE		3. ENTRY TYPE CODE/NAME		4. ENTRY NUMBER	
5. PORT		6. SINGLE TRANS. BOND		7. BROKER/IMPORTER FILE NUMBER			
		8. CONSIGNEE NUMBER		9. IMPORTER NUMBER			
10. ULTIMATE CONSIGNEE NAME				11. IMPORTER OF RECORD NAME			
12. CARRIER CODE		13. VOYAGE/FLIGHT/TRIP		14. LOCATION OF GOODS-CODE(S)/NAME(S)			
15. VESSEL CODE/NAME							
16. U.S. PORT OF UNLADING		17. MANIFEST NUMBER		18. G.O. NUMBER		19. TOTAL VALUE	
20. DESCRIPTION OF MERCHANDISE							
21. IT/BL/AWB CODE		22. IT/BL/AWB NO.		23. MANIFEST QUANTITY		24. H.S. NUMBER	
						25. COUNTRY OF ORIGIN	
						26. MANUFACTURER NO.	
27. CERTIFICATION				28. CBP USE ONLY			
I hereby make application for entry/immediate delivery.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accurate, the bond is sufficient, valid, and current, and that all requirements of 19 CFR Part 142 have been met.				<input type="checkbox"/> OTHER AGENCY ACTION REQUIRED, NAMELY:			
SIGNATURE OF APPLICANT				<input type="checkbox"/> CBP EXAMINATION REQUIRED.			
PHONE NO.		DATE		<input type="checkbox"/> ENTRY REJECTED, BECAUSE:			
29. BROKER OR OTHER GOVT. AGENCY USE							
DELIVERY AUTHORIZED:		SIGNATURE		DATE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24.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15 minute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799 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229.

[부록 6] 미국 CBP Form 7501, 납세신고, informal entry 서식

Form Approved OMB No. 1851-0022
EXP. 03-31-2012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NTRY SUMMARY

1. Filer Code/Entry No.		2. Entry Type		3. Summary Date	
4. Surety No.		5. Bond Type		6. Port Code	
7. Entry Date		8. Importing Carrier		9. Mode of Transport	
10. Country of Origin		11. Import Date		12. B/L or AWB No.	
13. Manufacturer ID		14. Exporting Country		15. Export Date	
16. I.T. No.		17. I.T. Date		18. Missing Docs	
19. Foreign Port of Lading		20. U.S. Port of Unlading		21. Location of Goods/G.O. No.	
22. Consignee No.		23. Importer No.		24. Reference No.	
25. Ultimate Consignee Name and Address			26. Importer of Record Name and Address		
City State Zip			City State Zip		
27. Line No.		28. Description of Merchandise		32. A. Entered Value B. CHGS C. Relationship	
29. A. HTSUS No. B. ADA/CVD No.		30. A. Grossweight B. Manifest Qty.		31. Net Quantity in HTSUS Units	
				33. A. HTSUS Rate B. ADA/CVD Rate C. IRC Rate D. Visa No.	
				34. Duty and I.R. Tax Dollars Cents	
Other Fee Summary for Block 39		35. Total Entered Value		CBP USE ONLY	
\$				A. LIQ CODE	
Total Other Fees		\$		B. Ascertained Duty	
				C. Ascertained Tax	
36. DECLARATION OF IMPORTER OF RECORD (OWNER OR PURCHASER) OR AUTHORIZED AGENT				D. Ascertained Other	
I declare that I am the <input type="checkbox"/> importer of record and that the actual owner, purchaser, or consignee for CBP purposes is as shown above, OR <input type="checkbox"/> owner or purchaser or agent thereof. I further declare that the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was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at the prices set forth in the invoices are true, OR <input type="checkbox"/> was not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e statements in the invoices as to value or price are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also declare that the statements in the documents herein filed fully disclos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true prices, values, quantities, rebates, drawbacks, fees, commissions, and royalties and are true and correct, and that all goods or services provided to the seller of the merchandise either free or at reduced cost are fully disclosed. I will immediately furnish to the appropriate CBP officer any information showing a different statement of facts.				E. Ascertained Total	
				37. Duty	
41. DECLARANT NAME		TITLE		SIGNATURE	
				DATE	
42. Broker/Filer information (Name, address, phone number)				43. Broker/Importer File No.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CBP Form 7501 (06/09)

[부록 8] 호주 Industry Imports Manual, 2007., SAC 신고 시스템 화면

Self Assessed Clearance Declaration Header View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ICS DEV HELP **Self Assessed Clearance Declaration Header View** Version 1

Declaration ID: AAAANC4N3 Lodged Date: 15 JUN 2005 Branch

Status: FINALISED Brokerage Licence No: 0 Customs House Box No: 0

Importer Details ABN CAC CCID Importer ID: 52000049301 1 OR Importer Reference: 05/01 Importer Name & Address: P&O PORTS LIMITED 160 SUSSEX ST		Communicator Details Communicator Reference Contact Phone No: 0882345678 SAC Communicator: 52000049301 AQIS Inspection Location	
Delivery Address: STATE LIBRARY NORTH TERRACE Arrival Date: 16 JUN 2005 Supplier ID		Goods Description: BOOKS Supplier Name	
Transport Details Mode of Transport: AIR Discharge Port: AUADL ADELAIDE Destination Port Master Air Waybill No: 125-13579862 House Air Waybill No Consolidated Cargo Status Status			

[Event History](#) [Evaluation Log](#) [Outbound Msg](#) [View Declaration](#) [Customs Actions/Updates](#) [View Summary Details](#)

Declaration

[부록 9] 캐나다 CBSA, Memorandum D8-2-16 부록, 특송 수입 감면 Consist Sheet

APPENDIX

CONSIST SHEET

Carrier's Name: _____

Destination Office: Windsor

Package ID #	Exporter's Name and Address	Importer's Name and Address	No. of Packages	Description	Weight	Value	Country of Origin
005001	ABC Inc. 200 Big St. NY, NY 12345	Jane Smith 141 Main St. Ottawa ON A9B 2C3	1	Documents	10 gr.	\$1.00	U.S.

Total Number of Shipments: _____

Consist Sheet Completion Instructions

The following information must be shown on the Consist Sheet:

- Carrier's Name –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reporting the goods.
- Destination Office – The CBSA website at www.cbsa.gc.ca contains a directory of CBSA offices. Where the destination has more than one suffrance warehouse for the applicable mode of transport (for example, Toronto), the name of the receiving CBSA office must be followed by the name, abbreviation, or code of the intended warehouse of clearance (for example, Toronto-498).
- Package ID # – Indicate the carrier's individual control number for each shipment.
- Exporter's Name and Address – Indicat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or firm shipping the goods.
- Importer's Name and Address – Indicat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or firm in Canada to whom the goods are being shipped.
- No. of Packages – Indicate the quantity of goods being reported.
- Description – Give an accurate, concis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common trade terms.
- Weight – Indicate the weight of the shipment in metric or imperial measure. The unit of measure must be noted.
- Value – Indicate the value of the goods in Canadian funds, using the appropriate valuation method. For example, goods that are sent to an importer without charge still have an essential value.
- Country of Origin – Indicate the country where the goods originated.
- Total Number of Shipments – The total number of shipments on the Consist Sheet for which release is being requested.

[부록 10] 캐나다 CBSA, Memorandum D17-4-0 부록A, courier LVS 프로그램의 화물/반출리스트 샘플

APPENDIX A

CARGO/RELEASE LIST
(Courier Company Name)
Inbound to: Ottawa, Canada

Date of Arrival: _____ Carrier Code: _____

Foreign Country Office of Exit: _____ Vehicle ID Number: _____

Office of Release: _____

Pkg ID Number	Qty	Consignee/ Importer Name and Address	Shipper/ Exp/Vend Name and Address	Weight	VFD	Description	Country of Origin
------------------	-----	---	---	--------	-----	-------------	----------------------

Total Number of Shipments: _____

[부록 11] 캐나다 CBSA Form B3, Canada Customs Coding Form

1 IMPORTER NAME AND ADDRESS NOM ET ADRESSE DE L'IMPORTATEUR		NO. - N°	2 TRANSACTION NO. - N° DE TRANSACTION		Help	Aide	Restore - Restaurer		
			3 TYPE	4 OFFICE NO. - N° DE BUREAU	5 GST REGISTRATION NO. - N° DE TPS	6 PAYMENT CODE - CODE DE PAIEMENT	7 MODE OF TRANS. - MOD. DE TRANS.	8 PORT OF UNLOADING - PORT DE DÉMÂRQ.	9 TOTAL VFD - TOTAL DELA VD
10 SUB INSR NO. - N° DE SOUS-ENTÊTE	11 VENDOR NAME - NOM DU VENDEUR	NO. - N°	12 COUNTRY OF ORIGIN - PAYS D'ORIGINE	13 PLACE OF EXPORT - LIEU D'EXPORTATION	14 TARIFF TREATMENT - TRAITEMENT TARIFAIRE	15 U.S. PORT OF EXIT - BUREAU DE SORTIE DES É.U.	RESERVED FOR GCR USE RÉSERVÉ À L'USAGE DE L'AGENCE		
			16 DIRECT SHIPMENT DATE - DATE D'ÉPEDITION DIRECTE - M	17 CRCY. CODE - DEVISE	18 TIME LIMIT - DÉLAI	19 FREIGHT - FRET			

21 LINE LIGNE	22 DESCRIPTION DESIGNATION	23 WEIGHT / KGM POIDS / KGM	24 PREVIOUS TRANSACTION - TRANSACTION ANTERIEURE NUMER - NUMERO	25 LINE - LIGNE	26 SPECIAL AUTHORITY AUTORISATION SPECIALE				
27 CLASSIFICATION NO. - N° DE CLASSÉMENT	28 TARIFF CODE TARIFAIRE	29 QUANTITY QUANTITE	30 U - M	31 VFD CODE CODE VD	32 SIMA CODE CODE DE LMSI	33 RATE OF DUTY/IMBUEITY TAUX DE DROIT DE DOUANE	34 E.T. RATE TAUX T.A.	35 RATE OF GST TAUX DE TPS	36 VALUE FOR CURRENCY CONVERSION CONVERSION VALEUR POUR CHANGE
37 VALUE FOR DUTY VALEUR EN DOUANE	38 CUSTOMS DUTIES DROITS DE DOUANE	39 SIMA ASSESSMENT COTISATION DE LMSI	40 EXCISE TAX TAUX D'ACCISE	41 VALUE FOR TAX VALEUR POUR TAXE	42 GST TPS				

<p>DECLARATION - DÉCLARATION</p> <p>I JE _____ PLEASE PRINT NAME - LETTRES MOULÉES S.V.P.</p> <p>OF DE _____ IMPORTER / AGENT - IMPORTATEUR / AGENT</p> <p>DECLARE THE PARTICULARS OF THIS DOCUMENT TO BE TRUE, ACCURATE AND COMPLETE. DÉCLARE QUE LES RENSEIGNEMENTS CI-DESSUS SONT VRAIS ET COMPLETS.</p> <p>DATE _____ SIGNATURE _____</p>	<p>43 DEPOSIT - DÉPÔT</p> <p>44 WAREHOUSE NO. - N° D'ENTREPÔT</p> <p>45 CARGO CONTROL NO. - N° DE CONTRÔLE DU FRET</p> <p>46 CARRIER CODE AT IMPORTATION CODE DE TRANSPORTÉUR À L'IMPORTATION</p>	<p>47 CUSTOMS DUTIES DROITS DE DOUANE</p> <p>48 SIMA ASSESSMENT COTISATION DE LMSI</p> <p>49 EXCISE TAX TAUX D'ACCISE</p> <p>50 GST TPS</p> <p>51 TOTAL</p>
---	---	---

[부록 12] 캐나다 CBSA, Memorandum D5-1-1 부록A, Form E14, CBSA Postal Import Form

The image shows the CBSA Postal Import Form (Form E14) with its dimensions and layout. The overall dimensions are 11 inches wide and 5 1/2 inches high. The form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Header:** Includes 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logo and the title "CBSA POSTAL IMPORT FORM / FORMULAIRE DE L'ASFC DES IMPORTATIONS POSTALES".
- Form Fields:**
 - 1. Importer's name and address (Nom et adresse de l'importateur)
 - 2. Description (Description)
 - 3. Value for duty (Valeur en douane)
 - 4. Duty (Droits)
 - 5. Excise tax (Taxe d'accise)
 - 6. GST/HST (TVA)
 - 7. PST (TPP)
 - 8. Country of origin (Pays d'origine)
 - 9. Invoice No. (N° de la facture)
 - 10. Exchange rate (Taux de change)
 - 11. CBSA telephone No. (N° de téléphone de l'ASFC)
 - 12. Message (Message)
 - 13. Duty - GST (Droits - TVA)
 - 14. Excise tax (Taxe d'accise)
 - 15. GST/HST (TVA)
 - 16. PST - TPP (TPP)
 - 17. Handling fee (Frais de manutention)
 - 18. Total payable (Total à payer)
- Return to CBSA Section:** Includes checkboxes for "Return to the CBSA" and "Retourner à l'ASFC", and fields for "Day - Jour" and "Evening - Soir".
- Footer:** Includes the text "INVOICE/FACTURE" and "Part 1: Importer's copy - Partie 1: Copie de l'importateur".

Dimensions and layout details:

- Overall width: 11"
- Overall height: 5 1/2"
- Header height: 3/8"
- Main form area height: 4 3/4"
- Footer height: 3/8"
- Left margin: 1"
- Right margin: 1 1/8"
- Inner content width: 8 7/8"

[부록 13] 캐나다 CBSA, Memorandum D5-1-1 부록A, Form B2G,
Requesting Refund of Duties and Taxes on non-commercial
Importations

Requesting refund of duties and taxes on "NON-COMMERCIAL IMPORTATIONS" Remboursement des droits et des taxes sur << IMPORTATIONS NON COMMERCIALES >>		B2G (02/04)
A Instructions		
<p>1. Please check the reason for request below in Box B and indicate the amount of duties and taxes to be refunded in Box C.</p> <p>2. The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CCRA) requires that you provide all necessary documentation, such as credit notes or invoices, to support your request for a refund.</p> <p>3. Write the date and your telephone number, and sign this form in Box C.</p> <p>4. Mail the form to the nearest Customs Refund Centre (addresses below).</p> <p>5. The handling fee is for data entry, material handling, and collection services provided by Canada Post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the CCRA.</p> <p>Note: The handling fee is only refundable when the goods should have been duty free and tax exempt at time of importation.</p>		
<p>1. Cochez la raison pour laquelle la demande est faite à la case B ci-dessous et indiquez le montant du remboursement demandé à la case C.</p> <p>2. L'Agence des douanes et du revenu du Canada (ADRC) exige que vous produisiez tous les documents (notes de crédit, factures, etc.) élayant votre demande de remboursement.</p> <p>3. Écrivez la date et votre numéro de téléphone, et signez le formulaire à la case C.</p> <p>4. Postez le formulaire au Centre de remboursement des douanes le plus proche (adresses ci-dessous).</p> <p>5. Les frais de manutention représentent les services de saisie de données, de manutention du matériel et de recouvrement que fournit la Société canadienne des postes, conformément aux exigences de l'ADRC.</p> <p>Nota : Les frais de manutention ne sont remboursables que si les marchandises auraient dû être exonérées de droits et de taxes au moment de l'importation.</p>		
B Reason for refund request - Raison de la demande de remboursement		C Refund requested - Remboursement demandé
<input type="checkbox"/> Goods returned to sender/exporter - Marchandise retournée à l'expéditeur ou exportée If you have returned your goods to the sender, a credit note or proof of export to show that the goods have left Canada must be included with this claim. Si la marchandise a été retournée à l'expéditeur, incluez une note de crédit ou un document d'exportation prouvant que la marchandise est sortie du Canada.		<p>\$ Amount of refund requested - Montant demandé</p> <p>Date ▶ _____</p> <p>Signature ▶ _____</p> <p>Telephone numbers - Numéros de téléphone Day - Jour _____</p> <p>Evening - Soir _____</p>
<input type="checkbox"/> Goods classified or described incorrectly - Marchandise mal classée ou mal désignée If the goods are classified incorrectly, please attach an invoice or descriptive literature which indicates type or make of the goods. Si la marchandise a été mal classée, joignez la facture ou un document publicitaire la décrivant (nature et marque).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value assessed (should be) - Cotisation mal établie (devrait être de) \$ _____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 Autre (précisez) _____ If necessary, attach additional supporting documents. - Joignez des documents à l'appui supplémentaires, s'il y a lieu.		
<p>Mail this request to the nearest Customs Refund Centre (addresses below). Postez cette demande au Centre de remboursement des douanes le plus proche (adresses ci-dessous).</p>		
Customs Refund Centre Centre de remboursement des douanes 1557 rue Helle Street P.O. Box - C.P. 3080, Station Park Lane HALIFAX NS B3J 3G6	Agence des douanes et du revenu du Canada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Division du service à la clientèle Client Services Division 400, place d'Youville, 5 ^e étage - 5th floor MONTRÉAL QC H2Y 2C2	Customs Refund Centre Centre de remboursement des douanes 2724 Roxburgh Road, Unit - Unité 2 LONDON ON N6N 1K3
Customs Refund Centre Centre de remboursement des douanes 530 - 266 avenue Graham Avenue WINNIPEG MB R3C 0J8	Customs Refund Centre Centre de remboursement des douanes 685 rue Hamilton Street VANCOUVER BC V6B 2R4	

주: Form E14의 뒷면임

[부록 14] 캐나다 CBSA, Memorandum D5-1-1 부록B, Form B2G, CBSA
Informal Adjustment Request

FORM B2G, CBSA INFORMAL ADJUSTMENT REQUEST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 Agence des douanes et du revenu du Canada

PLEASE PRINT IN INK / VEUILLEZ IMPRIMER À L'ENCRE
INSTRUCTIONS ON REVERSE / INSTRUCTIONS AU VERSO

CUSTOMS INFORMAL ADJUSTMENT REQUEST
DEMANDE INFORMELLE DE RAJUSTEMENT DES DOUANES

NOTICE TO IMPORTERS - AVIS AUX IMPORTATEURS

This form is to be used when applying for refunds or adjustments on non-commercial importations. / Ce formulaire doit être utilisé quand vous faites une demande pour remboursements ou rajustements sur les importations non commerciales.

PART A — IMPORTER INFORMATION
PARTIE A — INFORMATION CONCERNANT L'IMPORTATEUR

1. Importer Name and Address - Nom et adresse de l'importateur Name - Nom No. - N° Street - Rue Unit No. - App. City - Ville Province Postal Code - Code postal		2. Telephone Number - Numéro de téléphone Residence Domicile () Business Bureau ()	
3. Customs Import Receipt Number (Please attach original import document) Numéro de reçu d'importation des douanes (Veuillez joindre le document d'importation original)		4. Date of Importation Date de l'importation Y - A M D - J	
5. Description of Goods - Description de la marchandise			
6. Reason for Refund/Adjustment Request Raison de la demande de remboursement ou de rajustement (a) <input type="checkbox"/> Goods Returned to Sender/Exported Marchandises retournées à l'expéditeur ou exportées (b)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Value Assessed Valeur évaluée incorrecte Value should be: _____ (c) <input type="checkbox"/> Goods Incorrectly Described or Classified Marchandises décrites ou classifiées incorrectement . . Devrait être : _____ (d) <input type="checkbox"/> Other (specify) Autre (préciser)			
7. Please provide a brief explanation of your request and attach the original import document plus documents to support your request, such as; if the goods have been returned to the sender, a credit note from the vendor or proof of export. If the goods were incorrectly classified, descriptive literature or an invoice from the vendor should be attached.		Veuillez fournir une brève explication de votre demande et joindre le document original et tout autre document pour appuyer votre demande, par exemple, si les marchandises sont retournées à l'expéditeur, une note de crédit du fournisseur ou prouve d'exportation. Si les marchandises sont classifiées incorrectement, la littérature descriptive ou une facture du fournisseur doit y être attachée.	
8. Declaration - Déclaration I declare the particulars of this document to be true, accurate, and complete. / Je déclare que les renseignements sur ce document sont vrais, exacts et complets. Signature _____ Date _____			

PART B — CUSTOMS USE ONLY
PARTIE B — À L'USAGE DES DOUANES SEULEMENT

11. _____ Date Received - Reçu le	12. Adjustment No. - N° de rajustement		14. Authority - Autorité
	13. Request Approved / Demande approuvée <input type="checkbox"/> Yes / Oui <input type="checkbox"/> No / Non		
15. Authorizing Officer - Agent autorisé		16. Decision Date / Date de décision Y - A M D - J	

관세연구 12-01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2012년 8월 23일 인쇄

2012년 8월 31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김수영 · 김미영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588-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